

북유럽의 교육복지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핀란드 -

김 정 현



비교법제 연구 13-20-⑨-2

**북유럽의 교육복지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핀란드 -**

김 정 현

**북유럽의 교육복지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핀란드 -**

**A Comparative Law Study on the
Legislation of Education Welfare in the
Nordic countries
- Finland -**

연구자 : 김정현(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Kim, Jung-Hyun

2013. 10. 4.

요 약 문

I. 배경 및 목적

- IMF경제위기 이후 사회의 양극화현상 심화는 사회경제적 측면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영역에서도 두드러지고 있음. 즉, 부모의 소득에 따른 학생들의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것임.
- 교육격차의 심화로 인한 계층 간의 불평등의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향후 한국사회에서는 교육을 복지의 문제로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 교육복지제도와 정책을 잘 갖추고 있는 핀란드의 교육복지 법제를 소개하고자 함
 - 핀란드의 교육복지 법제에 관한 연구를 통해 교육복지 정책개발의 기초 토대를 쌓고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II. 주요 내용

- 핀란드의 교육제도와 정책을 분석함.
- 핀란드의 무상교육 관련 법제와 정책을 소개함
- 핀란드의 소외계층교육 관련 법제와 정책을 소개함

- 핀란드의 교육복지는 인간의 평등이라는 헌법적 정신에서 출발함. 사회 전반의 제도와 정책들이 평등의 이념에 입각해 복지를 추구하고 있음. 교육제도와 정책 역시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국가적 신념에서 출발함. 이는 무상교육과 소외계층지원교육으로 이어지고 있음.

Ⅲ. 기대효과

- 핀란드의 교육복지 법제를 소개함으로써 향후 새 정부의 교육복지 정책 실현을 위한 기초자료와 법적 근거를 제공함.

▶ 주제어 : 교육복지, 교육복지법제, 의무교육, 무상교육, 소외계층지원 교육

Abstract

I . Background and objective

- Social polarization has been standing out in education as well as socio-economic since the economic crisis of IMF. In short, the gaps in education are deepening by income level of parents.
- The worse the issue of class distinction by the gaps in education is, the more the education will be recognized as an issue of welfare in Korean society.
- To introduce Finland in which educational welfare system and policy are put in place.
 - The purpose is to form a basis of educational welfare policy development and implicate it through the research of the educational welfare legislation of Finland.

II . Contents

- Analyze the educational system and policy of Finland.
- Introduce the legislation and policy related to free education of Finland

- Introduce the legislation and policy related to education for underprivileged class of Finland

- The educational welfare of Finland is triggered by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for human equality. System and policy of whole society pursue the welfare based on the ideology of equality. The educational system and policy also started from the national belief that country should provide a certain level of education to all people. And this leads to the free education and education for underprivileged class today.

III. Expectation

- Provide base line data and legal basis to realize a polity of educational welfare by the new government in the future by introducing the educational welfare legislation of Finland

➤ **Key word :** Educational welfare, educational welfare legislation, compulsory education, free education, education for underprivileged students

목 차

요 약 문	3
Abstract	5
제 1 장 서 론	9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9
제 2 절 연구의 범위	10
제 2 장 핀란드 복지정책 및 교육제도 개관	13
제 1 절 복지정책	13
I. 스칸디나비아 복지모델	13
II. 복지정책의 기본철학	14
제 2 절 교육제도	16
I. 학 제	16
II. 교육행정체제	21
III. 의무교육과 무상교육	22
IV. 교사양성과정	24
제 3 절 교육제도와 복지정책의 결합	27
I. 학생교육지원	27
II. 경제적 지원	30
제 3 장 핀란드 교육복지법제의 체계 및 내용	35
제 1 절 교육제도의 헌법적 근거	35

제 2 절 기초교육법	36
I. 체 계	36
II. 무상교육	38
III. 소외계층지원교육	47
IV. 기타 주요내용	50
제 3 절 대학법	62
I. 체 계	62
II. 주요내용	62
제 4 장 핀란드 교육복지법제연구의 시사점	65
제 1 절 교육복지와 사회통합	65
제 2 절 교육복지의 다양한 지원제도	65
제 3 절 무상교육 확대의 필요성	66
제 4 절 소외계층지원교육의 필요성	67
제 5 절 우수한 교사의 중요성	68
제 6 절 공교육의 정상화	69
제 5 장 결 론	71
참 고 문 헌	75
[부 록]	79
기초교육법	81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교육강국 핀란드’ - 핀란드의 교육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교육선진국이라고 평가받는 미국과 독일 등의 국가들도 그들의 성공요인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 연구자를 핀란드에 파견해 교육제도를 연구하도록 하고 있다.¹⁾ 핀란드가 교육강국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도 높을 뿐 아니라, 교육제도와 대학교육의 강한 경쟁력도 갖췄기 때문이다.

핀란드 교육은 3년마다 실시하는 PISA(국제학업성취도평가)²⁾에서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연속으로 1위를 차지했었다.³⁾ 2009년 평가에서는 중국, 한국에 이어 종합 3위를 했다.⁴⁾ 2000년 이후 줄곧 학업성취도 분야에서 세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IMD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교육경쟁력 순위에서도 핀란드는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1위와 3위를 차지했다. 이에 반해 한국은 동기간에 각각 31위와 25위에 머물렀다.⁵⁾ 핀란드는 2004년 이후 2013년까지 2007년과 2008년에 각각 6위와 8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3위

1) 이덕난, 「핀란드 교육제도의 특징 및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2013, 2면.

2) PISA는 OECD회원국을 대상으로 3년마다 만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읽기, 수학, 과학 등 세 가지 영역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3)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편), 「핀란드 교육 혁명」, 살림터, 2010, 39면에 따르면 세계 각국이 2000년부터 시작된 PISA의 결과에 관심을 갖는 것은 이 시험이 단순한 주입식 학력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해결력과 창의성, 학습에 대한 태도 및 지적 호기심 등 다양한 지표를 측정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한 같은 면에서는 “한국 교육의 성취는 경쟁의 결과이고, 핀란드 교육은 협력의 결과이다.”라는 PISA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4) 2009년 PISA 평가를 과목별로 보면, 수학, 읽기, 과학 3개 영역에서 각각 6위·3위·2위를 기록했다.

5) IMD 공식사이트는 <http://www.imd.org/wcc/news-wcy-ranking/>

이내의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은 44위에서 25위까지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학업성취도에 있어서 핀란드와 한국은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점이 없지만, 교육경쟁력 부문에 있어서 양 국가는 현격한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처럼 핀란드가 학업성취도뿐만 아니라 교육경쟁력에서도 세계 상위권 수준의 교육제도를 갖췄다고 평가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원인분석을 위해 국내외에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⁶⁾

반면에 한국의 경우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세계 상위권 수준을 유지하지만, 교육경쟁력의 순위가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교육과 사교육의 불균형이라고 생각한다. 사교육시장은 날이 갈수록 팽창하는 것과 달리, 교육격차의 확대는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공교육이 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교육복지의 확대와 공교육의 정상화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국가가 제공하는 교육복지서비스는 공교육을 통해 국민들에게 제공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교육선진국이자 교육복지국가인 핀란드의 교육복지 법제에 대한 소개·분석을 통해 교육복지분야 정책개발의 기초 토대를 쌓고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북유럽 국가 중 핀란드의 교육복지 법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핀란드 교육복지법제를 소개하기에 앞서 제2장은

6) 대표적인 연구로는 Pasi Sahlberg, “The Secret to Finland’s Success: Educating Teachers”, Stanford University School of Education. ; Pasi Sahlberg, “PISA in Finland: An Education Miracle or an Obstacle to Change?”, *Centre for Education Policy Journal*, 1(3), 2011.; 이덕난, 「핀란드 교육제도의 특징 및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2013. ;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편), 「핀란드 교육 혁명」, 살림터, 2010. ; 권충훈/김훈희, “핀란드 교육의 성공 요인 분석과 논의”, *교육사상연구* 제23권 제3호, 2009.

핀란드 교육제도와 복지제도의 전반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핀란드 교육복지제도의 현황과 특성에 대해 보다 더 면밀하게 검토할 계획이다. 제3장에서는 핀란드 교육복지법제의 체계와 내용을 연구하는 한편, 핀란드의 교육제도 및 정책을 소개할 예정이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핀란드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에 바탕해 한국의 교육복지법제에 줄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다만, 핀란드와 우리나라는 경제구조, 복지제도, 사회·문화적 배경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점이 있으므로, 평면적이고 단순하게 양 제도를 비교하는 서술에 그치거나, 핀란드 교육복지제도를 답습해야 한다는 식의 단편적인 결론을 맺지 않도록 연구과정에서 유의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법령분석을 중심으로 하되, 실태조사 및 사례 조사를 병행하여 핀란드의 보육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국내의 북유럽전문가와 교육·복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 개최를 통해 연구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자 하였다.

핀란드의 주요 교육관련법률로는 「기초교육법」과 「대학법」외에도 「일반계 고등학교법」, 「대학입학시험법」, 「직업교육훈련법」, 「성인직업교육법」, 「성인자율교육법」, 「예술 기초교육법」, 「학자금지원법」, 「중앙정부 지방이전사무 관련법」, 「교육문화 재정법」, 「해외 고등교육 자격요건법」, 「국가 언어능력 자격증법」, 「교사교육법」, 「직업교육교사 훈련법」 등이 있다.⁷⁾ 이 가운데 본 연구는 교육복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초교육법」과 「대학법」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7) 이덕난, 「핀란드 교육제도의 특징 및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2013, 16면.

제 2 장 핀란드 복지정책 및 교육제도 개관

제 1 절 복지정책

I. 스칸디나비아 복지모델

핀란드는 스웨덴·노르웨이·덴마크 등과 함께 스칸디나비아 복지국가모델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다.⁸⁾ 스칸디나비아 복지국가모델은 높은 조세율에 근거해 보편적 복지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한다는 점이 주요 특징이다. 복지의 문제를 시장에 원칙적으로 맡기되, 예외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에 국가가 개입하는 영미식 복지국가모델이나 사회보험에 주로 의존하고 국가가 나머지 역할을 담당하는 서유럽국가모델과는 차이점이 있다. 국가가 복지서비스 전반에 매우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광범위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앞서 언급한 두 가지 모델과는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후견주의적 모델이라고 지칭되기도 한다.⁹⁾

핀란드에서 복지는 사회보건부(Sosiaali-terveysministeriö,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¹⁰⁾에서 기본적인 틀을 수립하고 5개의 광역지역구(lääni)와 각 지역 자치단체(kunta)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

8) 鄭宗燮,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3, 236-237면에 따르면 복지국가의 유형을 3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복지의 문제를 시장기능에 우선적으로 의존하여 해결하되 취약계층에 대해서 국가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유주의적 앵글로색슨 복지국가 모델’, 질병·노령·실업 등 특정 상황에서 사회보험(social insurance)에 주로 의존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가 나머지 역할을 하는 ‘국가-조합주의적 유럽 복지국가 모델’, 국민이 부담하는 높은 조세에 의존하여 보편성 원리와 평등원리에 기초하여 실수요에 관계없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민주적 스칸디나비아 복지국가 모델’이 이에 해당된다.

9) 鄭宗燮, 앞의 책, 236면.

10) 핀란드 사회보건부 웹사이트 <http://www.stm.fi/>

서 추진하고 있다.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복지 지원과 수당은 전국에 걸쳐 있는 239개의 사회보험기관인 사회보험원(Kela, Kansaneläkelaitos)¹¹⁾을 통해 지원된다.

II. 복지정책의 기본철학

1. 사회적 기본권에 바탕한 사회민주주의의 전통

핀란드헌법 제1조는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조는 핀란드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명시하여 국민주권원리를 천명하고 있다. 제3조는 권력분립원리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입법권은 의회가 행사하고, 행정권은 대통령과 정부에게 속하며,¹²⁾ 사법권은 법원의 권한이다. 이처럼 엄격하게 분립된 권력구조가 보장하는 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핀란드의 국민들은 자유와 권리를 향유하고 있다.

핀란드는 전통적인 자유권 보장에 그치지 않고, 헌법 제19조상의 사회적 기본권에 근거해 사회보장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핀란드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은 우선적으로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받지 못하는 국민을 보호하고 있다. 즉,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국민은 생계를 위한 필요적 지원과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헌법 제19조 제1항). 그리고 기초생계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실업, 질병, 장애, 노령뿐만 아니라 자녀 출산이나 부양자를 잃은 경우 기초 생계에 대한 권리가 법률로 보장되고 있는 것이다(동조 제2항).

11) <http://www.kela.fi/in/internet/english.nsf>

12) 핀란드의 정치모델은 권력분산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김정현, 「이원정부제」 금봉어, 2009, 92-116면 참조.

그리고 국가는 보건, 의료와 보육 영역에서 사회보장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즉, 국가는 법률에 자세히 규정된 바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충분한 사회, 보건, 의료 서비스를 보장하고 국민의 건강을 증진한다. 또한 국가는 어린이를 양육하는 가정 및 기타 보호자를 지원하여 그들이 어린이의 복지와 개인 발달을 보장할 수 있게 한다(동조 제3항). 또한 주거문제도 사회적 기본권의 일환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은 모든 국민의 주거 관련 권리와 자신의 주거를 마련할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동조 제4항).

이와 같은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과 복지를 중시하는 북유럽의 전통적인 가치관 등이 맞물리면서 사회민주주의는 핀란드의 사회적 근간이자 사회의 기본철학이 되고 있다. 따라서 소득수준이 높은 계층의 조세부담이 높지만,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이 그 혜택을 받는 소득재분배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조세저항이 없지는 않지만, 국민의 세금이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는 높은 편이다. 복지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는 국가가 핀란드이다.

2. 보편적 복지의 추구

핀란드 복지정책의 기본철학은 보편적 복지이다. 보편적 복지란 소득과 계층에 무관하게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보편적 복지는 형평성을 중시하지만, 선택적 복지는 효율성에 더 방점을 둔다. 고비용이 소요되지만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보편적 복지와 저비용으로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선택적 복지 중 어느 쪽을 택할지는 사회의 기본철학과 맞물려 있다.

모든 국민을 수혜자로 보아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는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에게도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다. 선택적 복지가 구호적 기능을 갖고 있다면, 보편적 복지는 삶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핀란드는 사회적 소외계층 혹은 빈곤층을 선별하여 지원하는 방식의 선택적 복지정책보다는 모든 국민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보편적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

제 2 절 교육제도

I. 학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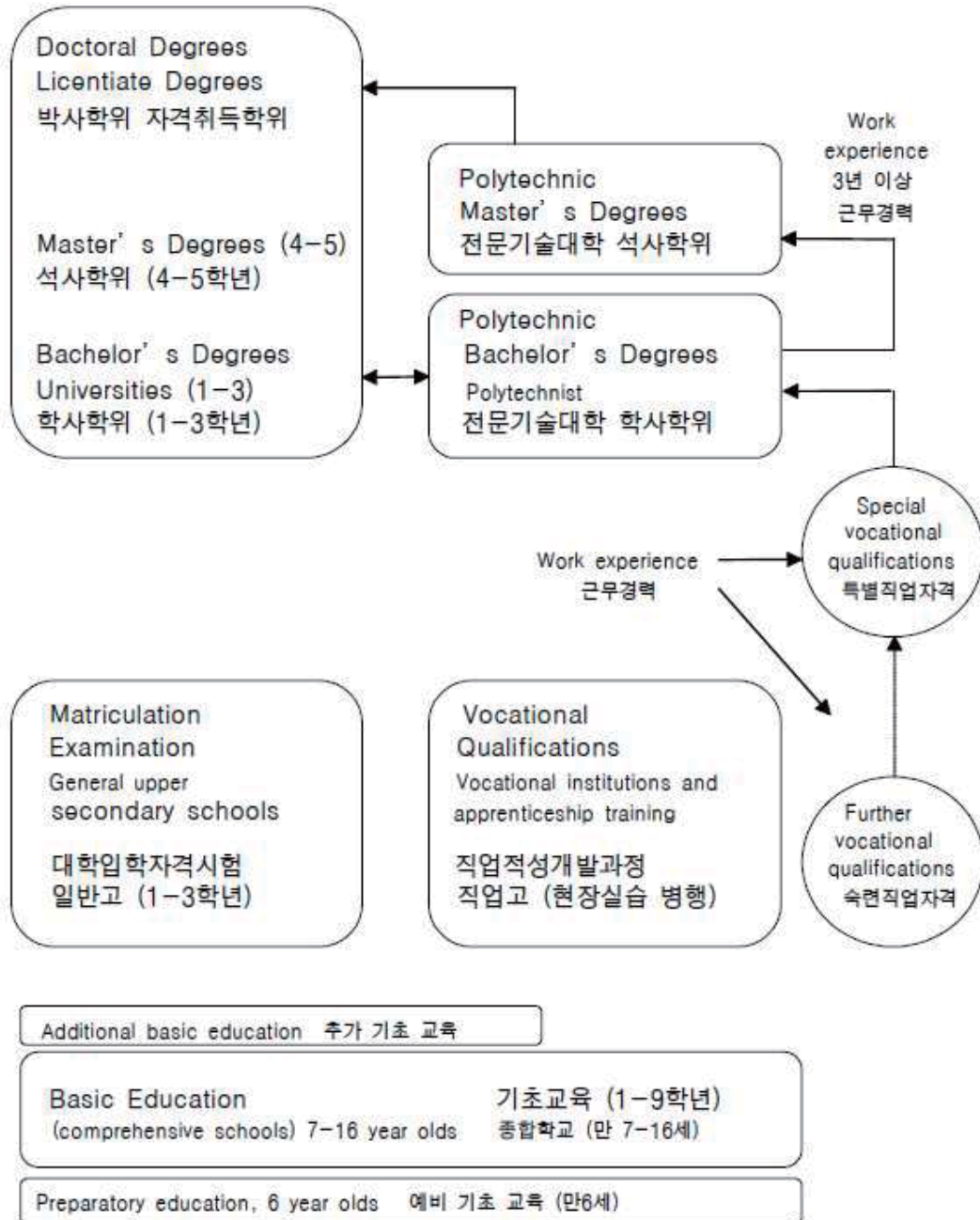
핀란드의 학제는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예비교육 - 한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에 해당하는 종합학교 - 고등학교(일반고와 직업고) -대학교 또는 전문기술대학교(폴리테크닉) -대학원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핀란드 교육의 학제를 알기 쉽게 구성한 것은 [그림] 1과 같다.

핀란드의 종합학교와 고등학교 중 사립학교가 존재하지만, 사립학교들은 대체로 종교학교이거나 슈타이너 학교(Steiner Schule)¹³⁾가 대부분이다. 사립학교도 정부의 지원금을 받아서 운영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등록금을 면제받는다.¹⁴⁾

13) 1919년 독일의 교육학자 루돌프 슈타이너(Rudolf Steiner)가 설립한 학교로 우리나라의 '대안학교'에 가깝다.

14)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편), 앞의 책, 72-73면

<그림 1> 핀란드의 학제¹⁵⁾



15) Anja Heikkinen, 「Notions on Finland Education」, 『전문가 간담회 자료집』, 국회입법조사처, 2012, 이덕난, “핀란드 교육제도의 특징 및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2013, 25면에서 재인용.

1. 예비학교

핀란드에서는 기초의무교육 과정에 입학하기 전에 예비학교(Pre-school)에 진학하게 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예비학교를 설치해야 하며, 이는 유아교육과 초등교육을 연계시키기 위한 과정이다.

만 7세가 되기 전에 학교생활에 아이들을 적응시키기 위해서 마련된 1년 과정으로 예비학교에 보내는 것은 학부모의 자율에 맡겨져 있으나, 2010년 기준으로 약 96%의 아이들이 참여하고 있다.¹⁶⁾

2. 종합학교

한국의 초등학교와 중학교 과정이 기초의무교육(Peruskoulu)으로 통합되어 운영된다. 기초의무교육의 1-6학년 과정은 한국의 초등학교와 같이 학급담임교사가 한 반을 전담하는 체계이다. 기초의무교육 7-9학년 과정의 교육과정과 수업 방식은 한국의 중학교와 유사하다. 이를 종합학교(Comprehensive School)라고 부른다.

만 7세에 1학년을 시작해 만15세에 9학년을 마치게 되며, 연간 수업 일수는 190일이다.¹⁷⁾ 10학년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학업부진학생들을 위한 일종의 보완교육 과정이다. 연간 약 3%의 학생들이 지원한다. 일과는 오전8시-오후 3시이며,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여 1-2학년 학생들은 취미활동을 할 수 있다.¹⁸⁾

16) 김병찬, “핀란드의 교육복지”, 북유럽의 교육복지 법제 제3차 워크숍 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2013, 10면.

17) 참고로 한국은 약 220일이다.

18) 김병찬, 앞의 글, 11면.

초등학교 단계의(7-12세) 학생들은 한 교실에서 대부분의 수업을 받지만, 중학교 단계(12-15세) 학생들은 각기 다른 교실에서 다른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의 수업을 수강한다.¹⁹⁾

3. 고등학교

기초의무학교를 졸업하면 일반고등학교 또는 직업고등학교로 진학을 한다. 2013년 현재 핀란드 학생들은 한국의 인문계고등학교에 대응하는 일반고등학교(Lukio)보다 직업학교를 선호하고 있다. 2000년대 이전과 달리 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²⁰⁾

(1) 일반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학생선발은 종합학교 내신성적에 의한 경쟁 선발로 이루어진다. 내신성적은 9학년 성적으로 판단한다. 고등학교의 서열화와 특성화가 있으며, 경쟁이나 시험이 없다는 것은 핀란드 교육에 대한 오해이다.²¹⁾

무학년제로 운영되며, 교육과정을 마치는데 2.5~5년 정도 소요된다. 75개의 강좌를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고, 강좌는 세분화되어 있다.²²⁾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연합에서 학교를 운영하고, 등록금과 급식비는 무료이지만, 교과서 및 학습도구에 관한 비용은 학생이 부담한다. 대학입학자격시험(Matriculation test)을 통과해야 졸업이 가능하다. 대학입학자격시험은 서술형과 논술형 시험으로 치러지며, 본인을 가르친 교사가 채점하는 방식이 특이하다.²³⁾

19)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편), 앞의 책, 71면

20) 정도상, “핀란드의 교육복지”, 북유럽의 교육복지 법제 제2차 워크숍 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2013, 41면.

21) 김병찬, 앞의 글, 12면.

22)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편), 앞의 책, 48면.

23) 김병찬, 앞의 글, 13면.

(2) 직업고등학교

직업고등학교도 일반고와 마찬가지로 종합학교 내신성적(9학년)을 기반으로 한 경쟁선발을 하며, 철저히 실습위주의 교육이 진행된다. 학교 규모는 대부분 대규모이어서 학생 인원이 2,000-6,000명에 육박한다. 성인들 역시 직업고등학교 진학하며, 전체 학생의 1/3 정도에 이른다. 마찬가지로 등록금과 급식비는 무료이지만, 교과서 및 학습도구에 관한 비용은 학생이 부담한다.

직업고등학교는 학년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교육과정을 마치는 데 약 3년 정도 소요되며, 졸업 후 대부분 취업을 하지만 약 15% 정도가²⁴⁾ 고등교육기관으로 진학한다.²⁵⁾

4. 대학교

종합대학(국·공립대 82%, 정부의존형 사립대 18%)을 포함한 고등교육기관은 모두 국가재정으로 운영되는 국립대학체제이다. 2013년 현재 핀란드에는 13개의 대학이 있다. 「핀란드 헌법」 제123조에 따라 대학은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2010년부터 대학법인화가 실시되어 대학에 대한 재정 및 행정의 자율성과 책무성은 더욱 강화되었다. 전문기술대학(폴리테크닉)은 기존의 직업훈련기관이 한 두 분야의 기술훈련을 담당했던 것에 비해, 보다 많은 분야에 걸쳐 복합적이고 수준 높은 기술교육을 담당하고 있다.²⁶⁾ 1996년부터 제도로 정착되었고, 2013년 현재 25개의 폴리테크닉대학이 있다.

대학의 학생선발은 대학입학자격시험+고교내신+대학별 본고사의 조합으로 치러진다. 폴리테크닉 대학의 학생선발은 고교내신+대학별 본

24) 대학 2%, 폴리테크닉 13% 정도라고 한다.

25) 김병찬, 앞의 글, 14면.

26) 이덕난, “핀란드 교육제도의 특징 및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2013, 33면.

고사의 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학생들의 등록금은 무상이며, 학업지원금 및 주택보조금도 지원된다.²⁷⁾

II. 교육행정체제

1. 교육문화부

핀란드의 중앙교육행정기관은 교육문화부이고, 교육문화부와 관련된 업무를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부장관이 함께 관장한다. 교육부장관은 문화체육부장관의 역할을 제외한 모든 교육문화부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며 교육정책을 주도한다.

문화체육부장관은 문화, 체육, 청소년 정책, 학교 정책, 학생 재정 지원 등을 소관업무로 한다. 사무차관은 교육과학부장관과 문화부장관 옆에서 각각의 정책을 준비하는 과정을 돕고, 다른 부처와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정책조율자로서의 역할도 수행한다.²⁸⁾

2. 국가교육위원회

핀란드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문화부 산하 국가기관으로서 예비 기초교육과 기초교육, 일반 및 직업 고등학교 교육훈련, 예술 분야 성인 교육 및 기초 교육의 개발에 관련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한다. 일반 교육위원회와 직업 교육위원회가 합병되어 1991년에 설립되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핀란드 교육 발전에 대한 책임을 갖는 기관이고, 운영위원장 아래에 일반교육, 직업교육훈련, 정보 및 평가 서비스, 교육 서비스 및 행정, 스웨덴어로 이루어지는 교육 등 5개 위원회와 사무국으로 구성된다.²⁹⁾

27) 김병찬, 앞의 글, 15면.

28) 이덕난, “핀란드 교육제도의 특징 및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2013, 5면.

29) 이덕난, 앞의 책, 7면.

3. 교육문화부와 국가교육위원회의 관계

교육문화부는 계획수립과 예산확보를 담당하고, 국가교육위원회는 실제 정책을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교육문화부가 사회 각 분야의 이해 당사자들이 제시한 계획 또는 제안을 반영하여 ‘교육과 연구를 위한 정부 5개년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예산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문화부로부터 총괄예산(Lump-sum budget)을 받아 영구사업과 시범사업을 통하여 정책을 실행한다.³⁰⁾

한국의 경우 행정청이 집행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갖고,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위원회가 아닌 행정청 산하의 위원회는 자문기구의 역할을 하는 점과는 차이가 있다.

Ⅲ. 의무교육과 무상교육

1921년 7-12세 아동에 대한 의무교육이 최초로 도입되었다. 1937년 세계 최초의 ‘모성보호 패키지(maternity package)’를 도입했다.³¹⁾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스칸디나비아 복지모델의 복지정책들을 제도화하기 시작했다. 이후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핀란드의 교육개혁이 단행되었다. 교육개혁 이전까지 핀란드의 교육체제는 대학진학을 위한 교육과 직업교육으로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이원화된 체제는 11세부터 적용되었기 때문에 11세에 대학진학여부를 결정해야 했다. 이러한 이원화된 체제는 사회계층에 따른 분리였다.³²⁾

30) 이덕난, 앞의 책, 9면.

31) 모성보호 패키지(maternity package)는 모든 산모들에게 영유아를 양육함에 있어서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기저귀, 담요, 옷, 장난감 등 다양한 물품이 포함되어 있다.

32)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편), 앞의 책, 167면.

이와 같은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바꾼 것이 종합학교 개혁이다. 종합학교는 1972년부터 1977년까지 사이에 진행된 종합학교 개혁을 통해 도입되었다.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주도한 이 개혁의 목적은 모든 아이들이 9년 동안 동일한 학교에서 교육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³³⁾

종합학교교육은 단순한 학제개편이 아니다. 이원화된 체제에 따라 학교·교사·교육과정이 분화되어 있던 것을 전면적으로 바꾸는 교육체제의 획기적인 개편이었다. 이러한 종합학교의 도입으로 15세까지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모든 국민들이 사회·경제적 배경과 무관하게 균등한 교육을 받도록 기존의 교육체제를 바꾼 것이다.

이처럼 종합학교를 도입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사회평등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둘째, 핀란드의 경제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것이었다. 기존의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진입하게 되면서 변화하는 사회경제구조에서 생존하기 위해선 인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신념이 강해졌다.³⁴⁾ 교육개혁은 국민의 평등권을 강화시키고, 급변하는 사회환경을 선도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핀란드의 의무교육은 종합학교 과정까지이다. 종합학교를 마친 학생들은 일반고등학교 또는 직업고등학교를 진학한다. 종합학교에서의 모든 교육은 무상으로 이루어진다. 등록금, 급식, 교과서, 학습자료 및 도구가 무상으로 지원된다. 종합학교 이후의 일반고와 직업고에서는 등록금과 급식비는 무상으로 지원되지만, 교과서 및 학습도구는 학생이 유상으로 부담한다. 대학교의 수업료도 면제되며, 학업지원금과 주택보조금도 지원을 받는다. 핀란드는 2009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

33) 김병찬, “핀란드 교육복지체도의 특징과 시사점”, 교육비평 제30호, 2011, 88면.

34)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편), 앞의 책, 168-169면.

(GDP, Gross Domestic Product)의 약 6.81%를 공공 교육부문에 지출하고 있다.³⁵⁾

IV. 교사양성과정

핀란드 교육경쟁력의 원천은 우수한 교사이다.³⁶⁾ 핀란드에서는 교원의 질을 높이기 위해 1970년대에 사범대학을 대학에 설치하고,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석사학위를 취득하도록 요구했다.³⁷⁾ 핀란드의 종합학교(초·중학교 과정)·고등학교 교사들은 석사학위취득자이고, 유아교육 교사들은 학사학위를 가져야 한다.³⁸⁾

또한 핀란드 교사는 교육학의 전문가이다. 교사들은 반드시 교육학을 공부해야 하는데, 학급담임교사의 교사교육과정에서는 담당교과목의 전문지식보다 교육학을 더 중요시한다. 또한 교육학에 대한 지식과 아울러 현장 교육에서 필요한 교수법과 커리큘럼 작성을 포함한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고 있다.³⁹⁾

교사의 역량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연구자로서의 교사이다. 교사는 강사로서의 역할도 수행하지만, 독립적인 연구자가 되어야 한다. 교사가 직접 교과과정을 편성한다. 교과과정에 대한 독자적인 연구자로서의 역량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둘째, 학생의 차이점을 인정하는 교육을 한다. 핀란드에서는 학생의 개인적인 능력과 학습 속도에 맞는 교육을 한다. 학생의 학습능력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학생의 수준에 따라 다른 교육을 한다. 각 개인에게 제공되는 교육 내용과 과제가 다른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생의 수준에

35) 상세한 내역은 다음의 사이트를 참조할 것 <http://www.tradingeconomics.com/finland/public-spending-on-education-total-percent-of-gdp-wb-data.html> (최종접속: 2013.9.30)

36) Pasi Sahlberg, "The Secret to Finland's Success: Educating Teachers", Stanford University School of Education, 2010, p. 1.

37)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편), 앞의 책, 172 면.

38) Pasi Sahlberg, "Lessons from Finland", *American Educator*, 35(2), 2011, p. 35.

39) 정도상, 앞의 글, 43면.

맞는 교육과 과제가 부여되기 때문에 낙오자가 없는 교육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교육방식은 교사가 학생의 개성과 특성을 존중하고, 그들의 자질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가능하다.⁴⁰⁾

학급담임교사는 학부에서 180학점을 따고 학사학위 논문(kandidaatin tutkielma)을 제출해야 하고, 석사과정에서는 석사학위 논문(maisterin tutkielma: Pro gradu)을 포함한 120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표 1> 학급담임교사 양성과정 학점 이수⁴¹⁾

(출처: www.helsinki.fi)

학사과정	학점	석사과정	학점
교사과정 필수공통과목	21	교육학 심화과정	80
교육학 기초	25	석사학위과정 및 논문	40
교육학 전공	35		
기초의무교육 과목	60		
부전공과 선택 과목	39		
총계	180	총계	120

헬싱키대학의 교사양성과정은 5년 석사학위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생들의 주전공은 ‘교육학’ 또는 ‘교육심리학’이록, 특별히 다문화교육을 특화시킬 수도 있다.⁴²⁾ <표 1>의 학점 이수 기준은 헬싱키대의 학급담임교사과정에서 운영하는 학위과정이다. 핀란드의 각 대학은

40) 정도상, 핀란드 교사양성과 교사연수의 현황과 시사점, 교육개발원, 2013, 3면.

41) 출처: www.helsinki.fi, 정도상, 핀란드 교사양성과 교사연수의 현황과 시사점, 교육개발원, 2013, 10면.

42) 김병찬, “핀란드의 교사양성교육 프로그램의 특성”, 비교교육연구 제23권 제1호, 2013, 59면.

독자적인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있어서 대학마다 이수 학점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⁴³⁾ 그리고 학생들이 2개의 부전공을 택하는 경우에도 이수하는 학점 분포는 달라진다. 그렇지만 모든 대학의 교과과정에서 세부적인 과목은 다를 수 있지만 교육학 기초와 전공을 합친 60학점 이수 원칙은 동일하다.⁴⁴⁾

핀란드에서 교사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한 별도의 임용고사는 없다. 유치원 교사는 유치원 교과과정에 입학하여 180학점을 이수하고 학사 학위를 취득하면 교사 자격이 주어진다. 마찬가지로 학급담임교사는 석사학위를 취득해서 그 자격을 획득한다.

핀란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180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대학에서는 일반적으로 학사과정을 3년으로 두고 있고, 대학에서 1학점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총 27시간의 강의나 세미나에 참여해야 한다. 180학점과 시간을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학부과정에서 총 4,800시간의 수업이다. 석사과정 120학점을 포함하면 총 8,000시간이다. 물론 모든 학점을 강의에 참여해서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반면 한국의 대학에서 학생들은 4년 동안 평균 140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다. 3학점 과목을 이수하는 데 주당 3시간씩 강의에 참여한다고 계산하면, 한국에서 학생들은 총 2,100시간의 수업을 듣는 것이다.⁴⁵⁾

핀란드와 한국을 비교했을 때 교사가 되기 위해 학생이 수업을 들어야 하는 시간이 핀란드가 한국보다 대략 4배 정도나 많다. 수업시간의 양이 반드시 교사의 질을 좌우한다고 단정짓기는 힘들지만, 핀란드에서 교사가 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43) 김병찬, 앞의 글, 54-66면은 헬싱키대학교와 위바스킬라대학교 사례를 비교 검토하고 있다.

44) 정도상, 앞의 글, 10면.

45) 정도상, “핀란드의 교육복지”, 북유럽의 교육복지 법제 제2차 워크숍 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2013, 45면.

그리고 핀란드 교육학 전공과정의 특징은 학부과정부터 시작되는 현장실습이다. 한국과 핀란드의 교사양성과정에서 가장 다른 부분도 교사의 현장실습일 것이다. 핀란드의 교사 지망생들은 학부 2학년, 늦어도 3학년 때부터 현장실습을 시작한다. 핀란드의 교사과정에서 현장실습은 학부에서 시작하지만, 전문적인 실습은 석사과정의 심화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교사지망생들의 현장실습과정은 대학마다 고유의 커리큘럼을 두고 있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지만, 전체적인 교육과정은 본질적으로 유사하다.⁴⁶⁾

핀란드 교사과정에서 학부와 석사과정의 현장실습은 6개월에서 9개월로 구성된다. 이는 핀란드 고등학교까지의 실제 수업 기간의 3분의 2 또는 1년에 해당하는 기간이다. 실습전담교사가 교생실습을 지도한다. 교사지망생들은 실습과정을 통해 실제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사전에 하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정식교사가 되기 전에 사전준비를 만반에 하는 것이다.⁴⁷⁾

제 3 절 교육제도와 복지정책의 결합

I. 학생교육지원

1. 맞춤형 교육

핀란드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진다. 학생의 학습방식, 관심분야, 자질, 학업수행능력, 개인 환경, 성격 등 다양한 요

46) 정도상, 핀란드 교사양성과 교사연수의 현황과 시사점, 교육개발원, 2013, 27-28면에 따르면 “예를 들어, 헬싱키대학교에서는 학부과정이 이론과 연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학부의 현장실습은 3학점에 불과하다. 투르쿠대학교에는 학부과정에 ‘교사와 교육자의 길 1’, ‘교사와 교육자의 길 2’로 구성된 현장 실습이 편성되어 있다. 교육학 기초과정부터 현장실습을 하는 위바스펠라대학교에는 전공과정에 ‘현장실습 2’가 편성되어 있다.”고 한다.

47) 정도상, 핀란드 교사양성과 교사연수의 현황과 시사점, 교육개발원, 2013, 28면.

소들에 대해 교사가 관심을 갖고 그에 걸맞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학생의 다양한 환경은 학습동기와 결과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교수방식을 통해 학생에게 지식을 유효적절하게 전달하는 한편, 학생의 학습의욕도 고취시킬 수 있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의 성장정도와 학습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 학생에 대한 평가권은 오직 교사만이 갖는다. 개인 맞춤형 교육은 학습의 범위, 깊이 및 학습속도 등에 대한 고려를 의미한다. 교사는 학생에게 알맞은 교육의 내용과 자료 등을 제공하고, 과제물의 양과 학습기간에도 각기 다른 배려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가장 적합한 학습방법을 찾고,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⁴⁸⁾

2. 특수교육지원

학생이 정상적인 성장, 발전, 학습을 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에 특수교육지원(Erityinen tuki)이 이루어진다. 특수교육지원은 일반적인 교육과 격리된 방법이나 장소가 아닌, 일반적인 교육의 현장에서 이루어진다. 즉, 연장된 의무교육의 개념이다. 따라서 특수교육지원은 모든 학생이 기초의무교육이 끝난 후에 지속적인 학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⁴⁹⁾

특수교육지원은 기초의무교육 2학년이 끝난 후 그리고 7학년에 진급하기 전에 서면에 의해 결정된다. 이 결정은 기초교육법이 규정한 바에 따른다. 특수교육지원을 받도록 결정된 학생은 핵심적인 교육전문집단의 지원, 통역 서비스, 기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필요

48) 정도상, “핀란드의 교육복지”, 북유럽의 교육복지 법제 제2차 워크숍 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2013, 46-47면.

49) 정도상, 앞의 글, 47면.

할 때는 교육과정을 예외적으로 조정하여 그 학생에게만 적용한다.

예비학교 또는 기초교육 이전에도 심리적, 의학적 평가에 기초해서 특수교육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학생의 장애, 질병, 성장지체, 정신장애 등의 요인이 아니라도 실시할 수 있다. 강화교육을 거치지 않아도 교통사고 또는 질병에 의해서 특수교육 대상자로 판정을 받을 수 있다.⁵⁰⁾

3. 보충교육

보충교육(Tukiopeetus)은 일시적으로 학습에서 제외된 경우 또는 짧은 기간의 학습 지원이 필요할 때 이루어진다.⁵¹⁾ 보충교육은 사유에 해당할 경우 즉시 시작한다. 이는 학생이 필요한 과제, 수업시간, 개인 지도가 포함될 수 있고, 다양한 방법 및 자료가 사용된다.

보충교육은 학생의 학습계획에 따라서 일반 수업시간 또는 정규수업이 끝난 후에 할 수 있다. 그리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집단교육 또는 소규모 집단교육을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개인에 대한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일차적으로 교사가 보충교육대상자를 파악하고, 학생 및 부모와 협의해 교육실시여부를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결석한 학생, 학습부진학생들이 대상이 되며, 특수교육 이전에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4. 연장교육의무

장애나 질병으로 인해서 9년 내에 기초의무교육의 학업을 마칠 수 없을 경우 학업을 조기에 시작하여 11년 동안 교육을 받는다.⁵²⁾ 예비학교 교육은 1년 또는 2년 동안 연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학생이 기초의무교

50) 정도상, 앞의 글, 47면.

51) 이하의 내용은 정도상, 앞의 글, 48면.

52) 이하의 내용은 정도상, 앞의 글, 49면.

육에 대비하여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친 후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연장교육(Pidennetty oppivelvollisuus)을 받는 학생들은 청각·시각 장애인, 그리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성장이 더딘 학생들이다. 만5세가 되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들에게는 의무로 규정되어 있는 제2공용어와 외국어를 가르치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다. 과목조정을 통해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이 학생들에게 활동 영역 위주의 교육을 할 수 있다. 활동영역이라 함은 동기부여 능력, 언어, 의사소통, 사회적인 능력, 일상적인 활동 능력, 인지 능력을 포함한다. 연장의무교육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최대한 학생의 동기 유발과 도달 가능한 목표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학생의 흥미를 자극할 수 있어야 한다. 평가는 반드시 서술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이들의 교육 계획에는 전문인력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II. 경제적 지원

1. 기본적인 경제적 지원

핀란드에서는 의무교육부터 대학의 박사과정까지 수업료와 등록금 등의 비용이 무상이다. 이 혜택은 핀란드에 장기 비자를 받고 KELA 카드를 받은 외국인 학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초학교, 일반고등학교, 직업학교에서는 무상으로 점심식사를 제공한다. 종교에 따른 음식의 제한이 있을 때는 별도의 음식을 제공한다.

기초의무교육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모든 학습에 필요한 학용품과 교재도 무상으로 제공된다. 가정에서 따로 준비해야 할 준비물이 없다. 다만 고등학교 과정에서 사용하는 교재는 개인의 비용으로 구입해야한다.⁵³⁾

53) 정도상, 앞의 글, 49-50면.

2. 학습지원금

핀란드에서는 본인의 학업의지가 있을 경우 경제능력의 이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충분한 지원책이 될 수는 없을지라도 학생에게 최소한의 비용을 제공함으로써 학업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학습지원금(Opintotuki)으로는 몇 가지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학습지원수당이 있고, 주거지원비와 학업비용대출이 있다. 외국에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이러한 지원을 한다는 점이 특이하다. 그리고 이 외에도 교통비 지급, 식사비 지원, 방과 후 학습 지원 등이 포함된다.⁵⁴⁾

(1) 학습지원수당

고등학교와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받는 학습지원수당(Opintoraha)이다.⁵⁵⁾ 학습지원수당은 고등학교와 대학교, 나이, 주거형태에 따라서 기본 지원금이 결정되어 있고, 본인과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지원금이 감소 또는 증가할 수 있다. 기본적인 지원금은 다음과 같다.

<표 2> 교육과정에 따른 연령별 학습지원수당⁵⁶⁾

(단위: 유로)

구 분	고등학생	대학생
결혼 또는 부양 가족이 있을 때	246	298
독립 거주 20세 이상	246	298

54) 정도상, 앞의 글, 53면.

55) 이하의 내용은 정도상, 앞의 글, 53-54면.

56) 정도상, 앞의 글, 54면.

구 분	고등학생	대학생
독립 거주 18~19세	246C	298
독립 거주 17세	100B	145A
부모와 거주 20세 이상	80A	122A
부모와 사는 17~19세	38B	55A

위의 표에서 A, B, C는 각각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지원수당이 증가또는 감소할 수 있음을 표시하고 있다. 부모의 연간 소득이 22,760유로 이하이면 58유로에서 145유로까지 더 많은 지원금을 제공한다. 예를 들면 독립거주를 하는 대학생의 기본학습수당은 145유로이지만, 부모의 소득이 22,760유로 이하이면 145유로를 추가하여 총 290유로의 수당이 지급된다.⁵⁷⁾

2) 주거지원비

기초의무교육을 끝낸 학생이 임대해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임대료의 80%를 국가가 지원한다. 이를 주거지원비(Asumislisa)라고 한다. 그러나 월 임대료가 252유로를 넘는 경우에는 그 이상의 임대료에 대한 지원은 하지 않고, 월임대료가 33.63유로 이하일 때도 지급하지 않는다. 부모의 집을 임대해서 거주할 때는 최대 58.87유로를 지급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부모의 집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원비를 제공하지 않는다.⁵⁸⁾

3) 학업비용대출

핀란드에서는 학업지원수당과 주거지원비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별도의 비용이 필요하게 마련이다. 통신비, 식비, 기타 문화

57) 정도상, 앞의 글, 53-54면.

58) 앞의 글, 54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비용 등이 그 예일 것이다. 이와 같은 비용의 마련을 위해 핀란드에서는 학업비용대출을 해주고 있다. 학업비용대출은 국가가 보증하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하는 시스템이다. 대체로 학업대출금의 대출이자율은 4% 이내이고, 매 6개월마다 6월 15일, 12월 15일에 발생한 전체 이자의 1%를 상환하게 되어 있다. 이를테면 4,000 유로를 대출 했을 경우, 년 4%의 이자이면 160유로의 이자가 발생한다. 대출자는 전체 4% 중에서 1%에 해당하는 이자 비용으로 40유로를 연2회에 걸쳐서 20유로씩 상환한다. 나머지 상환하지 않은 대출이자율은 대출 원금에 가산되어 1년이 지난 후의 대출원금은 4,120유로가 된다. 학생들의 대출금에는 한도가 정해져 있다.⁵⁹⁾

<표 3> 국가보증대출한도 금액⁶⁰⁾

(단위: 유로)

개인의 학습 상황	국가보증한도액
18세 이하의 대학 재학생이 아닌 경우	160
18세 이상의 대학생이 아닌 경우	300
대학생	300
성인교육 대상자	300
해외 유학생	600

3. 교통비지원

교통비는 기초의무교육학교와 대학생에는 지원되지 않고, 일반고등학교와 직업학교 학생들에게만 지원된다. 가장 짧은 거리로 계산해서 통학거리가 10킬로미터 이상일 때만 교통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59) 정도상, 앞의 글, 55면.

60) 정도상, 앞의 글, 55면.

통학거리 100킬로미터 이상의 교통비는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교통비는 대체로 5킬로미터 단위로 증가된다.⁶¹⁾

4. 식비지원

대학 구내 식당의 음식비는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학생들은 구내 식당을 이용할 수 있고, 지역마다 정해진 식당이 있어서 한 끼당 1.94유로의 지원을 받는다. 헬싱키 지역에는 65개 정도의 학생 할인식당이 있다.

위와 같은 일반적인 지원 외에도 학생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일반인의 50%의 할인, 저렴한 방과후 학습, 신문 구독비 할인 등 각종 혜택을 받는다.⁶²⁾

61) 정도상, 앞의 글, 56면.

62) 정도상, 앞의 글, 56면.

제 3 장 핀란드 교육복지법제의 체계 및 내용

제 1 절 교육제도의 헌법적 근거

핀란드는 1917년 러시아 제국으로부터 독립한 후 1918년 백군과 홍군간의 내전을 경험했다. 내전 이후 핀란드의 헌법이 제정되었다. 1919년 제정된 핀란드의 성문헌법은 4개의 기본법인 Constitution Act(1919.7)와 Parliament Act(1928), Ministerial Responsibility Act(1922), Act on the High Court of Impeachment(1922)로 구성되었다. 헌법제정 50주년인 1969년부터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법학·정치학·사회학 분야에서의 소장학자들이 주도한 혁신적인 헌법 개정 운동은 기존의 헌법을 내전과 전쟁으로 점철되었던 구시대의 역사적 산물로 간주하였다. 대통령·정부와 의회의 관계를 중심으로 논의하기 위해 모든 정당이 참여하는 헌법개정위원회가 설치되었으나 Kekkonen 대통령의 반대로 헌법 개정 논의는 중단되었다. 이로 인해 헌법 개정의 동력이 상실되었으나 1995년 사민당의 리포넨(Lipponen)총리가 차기 대통령 선거해인 2000년을 최종시한으로 설정해 개헌일정을 잡았다. 1995년에 임명된 전문가 실무그룹의 검토를 거쳐 1996년부터 의회 산하에 헌법위원회를 구성하여 헌법 개정 문제를 논의하였다. 4개의 기존 성문 헌법을 1개로 통일한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1999년 6월 22일 거의 만장일치로 의회에서 통과된 후 2000년 3월 1일부로 발효되었다.⁶³⁾ 현행 헌법은 2000년 개정된 것이다.⁶⁴⁾

63) Antero Jyränki, "Finland: Foreign Affair as the Last Stronghold of the Presidency", *European Constitutional Law Review*, Vol.3, 2007, pp. 294-297.

64) 핀란드헌법 영문판은 <http://confinder.richmond.edu/admin/docs/Finland1999English.pdf>
참조. 최종접속 2013. 9. 1. 핀란드헌법 원문은 <http://www.finlex.fi/fi/laki/ajantasa/1999/19990731>
참조. 최종접속 2013. 9. 1

헌법 제16조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무상으로 기본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교육을 받을 의무에 관해서는 법률로 정한다(헌법 제16조 제1항). 국가는 법률에 규정된 바에 따라 모든 국민이 자기 능력과 특별 요구에 따라 다른 교육 서비스를 받을 평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유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을 개발할 기회를 보장한다(동조 제2항). 이처럼 헌법 제16조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무상교육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평등하게 제공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헌법 제123조는 “대학은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주(州)와 지자체가 기타 교육 서비스를 통제하는 기준과 사립 교육기관에서 교육에 상응하는 것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의 부여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헌법 제125조는 “핀란드 시민권자만 공무원으로 임명될 수 있다고 하면서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자격기준은 기술과 능력, 검증된 시민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러한 공무원의 자격요건은 교사에게도 적용된다.

제 2 절 기초교육법

I. 체 계

기초교육법(Basic Education Act, 628/1998)은 총 10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음과 같은 체계를 갖고 있다. 제1장 적용 및 목적(Application and objectives)은 법률의 적용(제1조), 교육의 목적(제2조), 교육의 기본(제3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2장 교육제공자로서 지방정부(Local authority as education provider)은 예비 기초교육과 기초교육

마련에 대한 법적 의무(제4조), 기타 교육 및 활동에 대한 의무(제5조), 학교 배정 결정의 의무(제6조) 등 지자체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제3장 기타교육제공자(Other education providers)는 교육 제공자로 등록된 협회나 재단(제7조), 교육제공자로서의 정부(제8조) 등 기타 교육 제공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4장 교육(Education)은 교육 기간(제9조), 수업 언어(제10조), 교육 내용(제11조), 모국어(제12조), 종교교육과 도덕(제13조), 수업시수의 배분과 핵심교육과정(제14조), 교육과정(제15조), 보충수업 및 단시간 특수교육(제16조), 강화된 지원(16a조), 특수 지원(제17조), 개인별 수업 계획(제17a조), 특수 교육(제18조), 공교육(제19조), 시범운영(제20조)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5장 평가(Evaluation and assessment)는 교육평가(제21조), 학생평가(제22조) 등 평가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제6장 학습시간(Working time)은 학년도(제23조), 학생의 학업 분량(제24조) 등 학사일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7장 의무교육 및 학생의 권리·의무(Compulsory education and the pupil's rights and duties)는 의무교육(제25조), 의무교육 이수(제26조), 예비 기초교육에 대한 권리(제26a조), 입학 연령에 대한 예외(제27조), 교육 장소(제28조), 안전한 환경에 대한 권리(제29조), 교육받을 권리(제30조), 무상교육(제31조), 학생복지(제31a조), 등하교(제32조), 학교 시설(제33조), 보건 복지(제34조), 재할 협력(제34a조), 학생의 의무(제35조), 규율(제36조), 징계과정과 정학조치(제36a조), 퇴학 조치(제36b조), 법원 판결 관련 징계 조치(36c조) 등 의무교육 및 학생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8장 기타조항(Miscellaneous provisions)은 교직원(제37조)과 별도의 시험(제38조), 특수교육 지원 서비스(제39조), 개인정보 취급과 비밀유

지(제40조), 제41조(정보 접근), 향소(제42조), 재정(제43조), 학비(제44조), 감독의무의 직무유기(제45조), 의무 교육 외 교육(제46조), 보조 활동(제47조), 학생회(제47-1조), 구체적인 사항(제48조) 등 별도의 장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기타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제8-1장 사전 및 사후학교활동(Before- and after-school activities)은 목적과 지침(제48a조), 제공 범위(제48a조), 평가(제48a조), 안전한 환경과 학교 혜택에 대한 권리(제48a조), 인력(제48a조), 지원금(제48a조) 등 등교 전과 방과 후 활동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9장 효력발생 및 경과규정(Coming into force and transitional provisions)은 법적 효력 발생일(제49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II. 무상교육

1. 의무교육 및 학생의 권리·의무

핀란드의 의무교육과정은 종합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의무교육에 한정된다. 기초교육법 제25조는 의무교육에 대해 정하고 있다. 핀란드에 영주하는 아동은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의무교육은 아동이 7세가 되면 시작한다. 의무교육은 기초교육 교육과정이 성취되거나, 의무교육 시작 후 10년이 경과하면 종료한다(제1항). 아동의 불구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기초교육의 목표들이 9년 내에 달성되기 어려운 경우, 의무교육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1년 먼저 시작하여, 11년간 지속될 수 있다(제2항).

제26조는 의무 학교교육의 성취에 대해 정한다. 의무적 취학연령의 아동은 이 법에 따라 제공하는 기초교육을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기초교육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지식을 획득해야 한다. 제25조 제2항에서 언급한 연장된 의무교육을 받는 아동은 의무교육 첫 해에 예비기초교육에 참여해야 한다(제1항).

교육제공자는 기초교육을 행함에 있어 학생의 결석을 감시하여 인가되지 않은 결석은 학생의 부모/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의무교육에서 학생의 부모/보호자는 의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제2항). 의무적 취학연령의 아동이 이 법에 따라 제공되는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해당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정부는 아동의 발달을 감독해야 한다(제3항).

2. 예비기초교육

핀란드에서는 기초교육을 받기 이전에 정규교육에 적응하기 쉽도록 아동들에게 예비기초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즉, 취학전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를 권리로 보장하고 있는데, 제26조a는 취학전 교육에 대한 권리에 대해 정한다. 아동은 의무교육 개시 전에 예비기초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연장된 의무교육을 받는 아동과 제27조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보다 1년 늦게 기초교육을 시작하는 아동은 법으로 정한 의무교육의 첫 해에 예비기초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제1항). 제26조 제1항이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예비기초교육의 참여는 해당 학생의 부모/보호자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예비기초교육의 등록에 관한 규정은 필요한 경우 명령에 의하여 제정되어야 한다(제2항). 예비기초교육에 있어 교육그룹의 형성에 관한 규정은 필요한 경우 명령에 의하여 제정되어야 한다(제3항).

제27조는 취학연령의 예외에 대해 정하고 있다. 심리학적 검토 및 필요한 경우 의학적 검토에 기초하여 필수수학능력을 가진 아동은 지정된 시기보다 1년 먼저 기초교육을 시작할 선택권을 갖는다. 상기 검토에 기반하여 교육제공자는 해당 아동에게 지정된 시기보다 1년 먼저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라할 수 있다.

3. 학교교육의 장소

제28조는 학교교육의 장소에 대해 정한다. 제29조는 안전한 학습환경에 대한 권리에 대해 정한다. 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은 안전한 학습환경에 대한 권리가 있다(동조 제1항). 교육제공자는 교육과정 설계와 관련하여, 폭력, 왕따, 괴롭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을 집행 및 감독해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그러한 계획의 형성과 관련하여, 핵심 교육과정상의 규칙을 발해야 한다(제2항).

제30조는 수업 지도에 대한 권리에 관해 정한다. 등록된 학생은 필요에 응하여 교육과정에 따라 배우고, 가이드상담을 받으며, 학습에 있어 충분한 지원을 받고, 수업일에 등교할 권리가 있다(동조 제1항). 수업 지도가 교육과정에 있어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그룹이 형성될 수 있다(제2항).

4. 무상교육

핀란드의 종합학교 과정은 무상교육이다. 기초교육법 제31조는 무상교육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수업, 필수 교과서, 그 밖의 수업교재, 그리고 학교 기자재는 학생에게 무상이다. 교육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이 무상인 것이다.

그리고 장애아동이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은 교육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해설 및 조력 서비스, 그 밖의 교육 서비스, 특별한 원조, 제39조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향유할 추가적인 권리를 가진다(제1항).

기초교육을 받는 학생에게는 수업일에 균형 잡히고, 적절하게 구성되며, 감독을 받는 식사가 제공되어야 한다(제2항).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제공되는 교육 및 주무부에 의해 부여된 특유의 교육목표에 기초하여 제10조 제1항에 언급된 언어 이외의 언어로 사적인 조직 또는 재단에 의하여 제공되는 교육에 대해서는 학생에게 적절한 비용이 부과될 수 있다(제3항).

5. 학생복지

기초교육법은 학생의 복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제31조a는 학생복지에 대해 정하고 있다. 학생은 교육을 받기 위해 필요한 학생복지를 무상으로 누릴 권리가 있다. 학생복지는 양호한 학습, 정신적·육체적 건강, 사회적 행복,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도움이 되는 조건을 조성하고 유지하는 조치를 의미한다(제1항). 학생복지는 교육제공자가 채택한 교육과정에서 정하고 있는 학생복지와 공중보건법에 규정된 학교보건을 구성하는 학생복지 서비스,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등교지원을 포함한다(제2항).

학생복지는 해당 학생, 부모, 보호자 또는 그 외 해당 학생의 법정대리인과 협력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개별 학생에 관한 문제가 학생복지의 업무로 처리되는 경우, 그러한 문제의 처리는 소관사항이 직접적으로 그러한 문제를 처리하는 것인 학생복지 서비스의 제공 참여자만이 할 수 있다. 해당 학생, 부모, 보호자 또는 그 외 해당 학생의 법정대리인의 서면동의를 받거나 그 밖에 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문제의 처리에 다른 필요 집단이 참가할 수 있다(제3항).

개별 학생에 관한 문제가 학생복지의 업무로 처리되는 경우, 문서에 그러한 문제의 개시자 및 대상, 결정된 추가조치 및 그 이유, 문제 처리에 참여한 자, 해당 학생에 대하여 밝혀진 정보 및 해당 정보의 수득자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어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의 책임은 기록자인 교육제공자에게 있다(제4항).

교육제공자는 제36조 제1항 이하에서 언급한 제재를 야기하는 행동을 한 학생이나 제36조 제2항 및 제3항 이하에 따라 일시적으로 교육에의 참여가 배제된 학생도 필수적 학생복지는 제공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36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조치를 취한 후에도, 학생에 대한 감독이 방기되어서는 안된다(제5항).

6. 무료통학의 권리

제32조는 통학에 대해 정하고 있다. 기초교육을 받거나 자발적 추가교육을 받는 학생은 학교까지의 거리가 5킬로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무료로 교통수단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예비기초교육을 받는 학생은 집부터 학교까지 또는 보육법상의 어린이집으로부터 예비기초교육 장소까지의 거리가 5킬로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집부터 직접적으로 예비기초교육 장소까지 또는 어린이집부터 예비기초교육 장소까지 무료로 교통수단을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예비기초교육 장소에서 집이나 어린이집까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기초교육, 자발적 추가교육 또는 예비기초교육을 받는 학생은 위에서 언급한 교통이 학생의 나이나 다른 상황을 고려해볼 때 너무 어렵고, 힘이 많이 들거나 위험한 경우 무료로 교통수단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무료 교통수단 이용 대신 학생을 학교로 수송하거나 동반하는 데 대한 적절한 보조금이 지급될 수도 있다(제1항).

위의 제1항에서 언급한 매일의 통학시간은 기다리는 시간 포함하여 2시간 30분 이내여야 한다. 학생이 학년도 초에 13세가 된 경우에는 통학시간이 3시간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한다(제2항).

제1항에서 언급한 학생이 제6조 제2항에서 언급한 학교 이외의 학교 또는 교육시설에 입학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입학은 부모/보호자가 학생을 학교로 수송 또는 동반하는 비용에 대한 책임을 떠맡는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제3항). 교통수단을 기다리는 학생에게는 안내된 행동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제4항).

7. 무료숙박

제33조는 숙박시설에 대해 정하고 있다. 기초교육을 받거나, 추가교육을 받거나, 제25조 제2항의 연장된 의무교육상의 예비기초교육을 받는 학생의 통학이 제32조 제2항에서 규정한대로 충족되기 어려운 경우, 해당 학생은 무료로 숙식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제1항). 학년도 동안에 해당 학생은 휴일 및 주말에 숙박시설과 학생의 집 사이를 무료로 다닐 수 있다(제2항). 숙박시설의 학생은 숙박시설에 있는 자신의 거처에서 그들에게 적합한 합리적인 수준의 집안일을 해야 한다(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 제2항에서 언급한 학교 이외의 학교에 입학한 학생에게는 적절한 비용이 부과될 수 있다(제4항).

8. 징계 및 학생의 의무

기초교육법은 의무교육에 대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의 의무에 대해 규정하는 한편, 학생들이 징계를 받는 사유에 대해서도 정하고 있다. 다른 학생들의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 등에 관한 징계를 규정하고 있다. 의무교육이라는 이유로 수업을 태만히 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태도이다.

제34조는 사고의 처리 및 보전에 대해 정하고 있다. 학교 또는 학습이 이루어지는 그 밖의 다른 장소, 통학의 도중, 숙박시설 등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은 해당 학생의 비용부담 없이 치료되어야 한다(제1항) 학교보건 및 학생의 사회적·심리적 문제를 다루는 서비스는 별개의 규정이 제정되어야 한다(제2항).

제35조는 학생의 의무에 대해 정한다. 학생은 특별한 이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참석을 면제받은 경우가 아니면, 기초교육에 참가해야 한다(제1항). 학생은 열심히 과제를 완수해야 하며,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제2항).

제36조는 징계에 대해 정한다. 교육을 방해하거나, 학칙을 위반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학생에게는 방과 후 최대 2시간 동안 학교에 남아 있도록 하거나, 서면경고를 줄 수 있다. 위반이 심각하거나, 위에서 언급한 방과 후 남기 또는 서면경고 후에도 해당 학생이 계속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 학생은 최대 3개월의 유기정학을 받을 수 있다. 서면경고 및 정학은 제재이다(제1항).

수업의 나머지 사람들을 위해서 교육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또는 그 외 교육시설로부터 퇴거시키거나, 학교 모임에서 떠나도록 명령할 수 있다(제2항). 해당 학생의 폭력적이거나 공격적인 행동이 다른 학생 또는 학교 또는 그 외 교육시설에서 일하는 자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는 경우 또는 해당 학생의 방해행동이 교육 또는 교육과 관련된 행동을 곤란하게 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남아있는 수업일 이내의 기간 해당 학생이 교육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제3항).. 과제하는 것을 게을리 해 온 학생은 방과 후 최대 한 시간 동안 감독 하에 과제를 행하도록 명령을 받을 수 있다(제4항).

제36조a는 징계절차 및 정학의 집행에 대해 정하고 있다. 학생이 방과 후 학교에 남아있도록 하기 전, 서면경고가 학생에게 발하여지기 전, 그리고 학생이 정학을 받기 전에 징계조치를 야기한 행위 또는 의무태만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야 하고, 해당 학생이 이에 대하여 청문의 기회를 가져야 하며, 그 밖의 필요한 조사절차가 실시되어야 한다. 징계조치가 취하여지기 전에 해당 학생의 부모/보호자에게도 청문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해당 학생의 부모/보호자는 제36조에서 언급한 조치 이외의 조치에 대해서도 통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학

교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사회복지 집행 공무원에게도 학생이 일시적으로 교육에 참가하는 것이 금지된 경우에는 통지가 되어야 한다. 방과 후 학교에 남아 있기 및 서면경고에 관해서는 항상 공식적인 결정이 발하여져야 한다. 그리고 제36조에서 언급한 그 밖의 조치는 반드시 기록되어야 한다(제1항).

교육제공자는 정학을 받은 학생이 해당 학년 및 교육그룹의 진보에 뒤처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수업을 마련해야 한다. 정학을 당한 학생을 위하여 어떠한 수업을 줄지 교육과정에 기초한 개인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하며, 감독 하의 학습이 마련되어야 한다(제2항).

정학결정의 집행은 제31조 제1항 및 제2항 그리고 제4항 이하의 규정뿐만 아니라 행정재판절차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다(제3항).

학생이 격하고 위협적으로 행동해서 다른 학생 또는 학교 또는 그 외 교육시설에서 일하는 자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고,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이 재발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정학은 그 효력발생 여부에 상관없이 집행될 수 있다(제4항).

제36조b는 잠재적으로 위험성이 있는 학생의 배제에 대해 정하고 있다. 교장과 교사는 제36조 제2항에서 규정한 퇴거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학생을 교실 또는 그 외 교육시설로부터 배제할 권리를 가진다. 교장과 교사는 제36조 제3항에 따라 교육에 참가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금지된 후에도 떠나지 않는 학생을 학교건물로부터 배제할 권리를 갖는다(제1항).

배제되어야 할 학생이 배제하려는 노력에 저항하는 경우, 교장과 교사는 물리력을 사용하여 학생을 배제할 권리를 갖는다. 물리력은 해당 학생의 나이와 위협의 급박함 또는 저항의 격렬함을 고려할 때 적당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또한 전체적인 상황의 평가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제2항).

교장과 교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언급한 상황에서 합동하여 또는 개별적으로 행위할 수 있다. 해당 학생을 배제하는데 어떠한 폭행도 구도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폭력을 사용한 교사 또는 교장은 그러한 폭행의 발생에 대한 서면상의 해명자료를 교육제공자에게 제출해야 한다(제3항).

<표 4> 핀란드의 교육단계별 무상교육⁶⁵⁾

교육단계	무상범위	유상부담	비 고
영유아 교육·보육	예산의 80%는 국가지원 20%는 학부모 부담 가정 교육·보육(family care) : 정부에서 양육수당 지급 출생~15세까지 매월 아동수당 지급(출생 순위에 따라 100-140유로 등 차등 지급)	20%는 학부모 부담	
예비 기초교육	만 6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1년간의 무상교육		
종합학교	교육예산(중앙정부: 54.7%, 지자체: 45.3%, 2005년기준) 등록금, 급식, 교과서 무료, 학습자료 및 도구 무료지원		
일반고	등록금, 급식비 무료	교과서 및 학습 도구는 학생 부담	

65) 이덕난, 「핀란드 교육제도의 특징 및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2013, 30면 참조 재구성.

교육단계	무상범위	유상부담	비 고
직업고	등록금, 급식비 무료, 교과서 및 학습도구는 학생 부담	교과서 및 학습도구는 학생 부담	
종합대학	정부 지원금은 각 대학 예산의 약 64% 정도 - 학술원, 기업, 기타 공공 기관, EU 등에서도 재정 지원 모든 학생들의 등록금 무상 + 학업지원금 및 주택보조금 지원(약 월 500유로)		학업지원금 및 주택보조금 지원(약 월 500유로)
직업기술 대학 (폴리텍)	모든 학생들의 등록금 무상 + 학업지원금 및 주택보조금 지원(약 월 500유로)		학업지원금 및 주택보조금 지원(약 월 500유로)

Ⅲ. 소외계층지원교육

핀란드 기초교육법은 소외계층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다음과 같이 마련하고 있다.

1. 이중언어교육

제10조는 수업 지도언어에 대해 정하고 있다. 수업 지도언어와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수업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핀란드어 또는 스웨덴어이다. 수업 지도언어는 또한 사미어, 로마어, 수화도 가능하다. 학생이 수업을 따라가는 데 있어 위험이 없다면 수업은 위에서 언급한 학생

의 모국어 이외의 언어로도 행해 질 수 있다(제10조 제1항).

사미를 주생활 근거지로 하기 때문에 사미어에 숙달되어 있는 학생은 주로 사미어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청각 손상을 입은 학생은 필요하다면 수화로 교육이 이루어져야만 한다(동조 제2항). 교육제공자가 제1항 및 제2항에서 언급한 학생이 공부할 수 있는 수업 지도언어들 중 하나 이상의 언어로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 부모/보호자는 수업 지도언어를 선택해야 한다(동조 제3항). 추가적으로, 개별 교육그룹이나 개별 학교에서의 수업은 제1항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언어로도 주로 또는 전부가 행해질 수 있다(동조 제4항).

2. 특수교육

제16조는 보충수업 및 시간제 특수교육에 대해 정하고 있다. 일시적으로 학업에 뒤쳐졌거나, 학습에 있어 단기간의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보충수업을 받을 권리가 있다(제16조 제1항). 학습 또는 등교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은 시간제 특수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동조 제2항).

제16조a는 강화된 지원에 대해 정하고 있다. 학습 또는 등교에 정기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학생은 그에 맞추어 고안된 학습계획에 따라 강화된 지원을 제공받아야 한다. 학습계획은 그렇게 하지 않을 명백한 이유가 없다면 해당 학생, 부모, 보호자, 필요한 경우 그 외 해당 학생의 법정대리인과 협력하여 마련되어야 한다. 강화된 지원은 특히 제16조, 제31조, 제31조a에서 언급한 학생지원의 방식과 필수교육장치를 포함한다. 강화된 지원 및 학습계획의 중요 내용은 핵심 교육과정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제16조a 제1항).

강화된 지원의 개시 및 제공은 제31조a 제1항 및 제2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학생복지 업무에 대한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교육학적 평가에 기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학생에게 제공되는 지원은 학습계획에

기록되어야 한다. 강화된 지원은 학생의 발달수준과 개인적 필요를 고려하여 양적, 질적으로 적절하게 주어져야 한다(동조 제2항). 제17조는 특수지원에 대해 정하고 있다. 특수지원은 특수교육과 이 법에 의하여 제공되는 그 밖의 지원으로 구성된다. 특수교육은 학생에게 이익이 되고 그러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 허락하는 한에서 제공된다. 특수교육은 그 밖의 지도와 함께 제공되거나, 특수교실 또는 그 외 적절한 시설에서 부분적 또는 전적으로 제공된다. 이 항에서 언급한 학생의 교육은 제14조에서 규정한 대로 제11조 규정에 기속되지 않는다(제17조 제1항).

장애, 질병, 지연발달, 감정적 기능장애, 기타 상응하는 이유로 해당 학생이 학습할 수 없다는 것이 심리학적, 의학적으로 분명한 경우, 특수지원에 대한 결정은 예비기초교육이나 기초교육의 시작 전 또는 예비기초교육이나 기초교육 중에도 사전적인 교육학적 검토나 강화된 지원이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그런 경우에 특수지원에 대한 결정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토되어야 한다(동조 제4항).

지방정부이외의 교육제공자는 제1항에서 언급한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학생에 대한 특수지원 결정은 교육제공자의 제안에 따라 해당 학생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정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동조 제5항).

제17조a는 개별적 수업제공에 대한 계획을 정하고 있다. 특수지원에 대한 결정의 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개별적 수업제공에 대한 계획이 해당 학생을 위하여 마련되어야 한다(제17조a).

제18조는 특별 수업제공에 대해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특별수업을 받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학생이 기초교육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어느 정도의 선행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2) 환경과 선행학습을 고려할 때 기초교육 교육과정의 성취가

해당 학생에게 어느 점에서는 불합리하게 작용하는 경우 (3) 해당 학생의 건강과 관련된 이유로 정당화되는 경우 등이다(제18조)

제19조는 공교육에 대해 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 규정하는 교육은 국민을 위한 것이다.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제19조).

제20조는 시범교육에 대해 정하고 있다.

교육 또는 수업을 진작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시범교육은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수업시간의 할당, 핵심 교육과정과는 관련이 없다. 그리고 시범교육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 (1) 학생에게 행하는 연 또는 주의 수업 수 및 학생의 매일의 학습강도 (2) 학생이 학교 생활을 시작하는 시점 (3) 일학년으로부터 다른 학년으로의 이동(제20조 제1항). 시범교육은 교육부에 의한 인가를 받아야 한다(제2항). 시범교육의 인가는 교육제공자의 신청에 따라 부여된다(제3항). 시범교육 위한 인가는 최대 3년간 주어지고, 최대 2년간 연장될 수 있다. 시범교육은 국가교육위원회에 의해 채택된 시범교육 프로그램에 부합해야 한다(제4항).

IV. 기타 주요내용

1. 적용범위

기초교육법의 제1조는 적용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기초교육과 의무교육을 규정한다(제1조 제1항). 이 법은 예비기초교육에 대해서도 규정한다. 이것은 의무교육에 선행하는 기간 동안 주로 행해지는데, 이미 기초교육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을 위한 자발적 추가기초교육, 이민자들의 기초교육 준비 지도, 그리고 사전 및 사후 학교활동을 위한 것이다. 이 법에서 규정한 예비기초교육이 아동보육에 관한 법(36/1973) 제1조 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언급한 어린이집에

서 행해지는 경우, 예비기초교육은 아동보육에 관한 법 및 그에 따라 제정된 명령에도 어긋나서는 안된다.(Amendment 1136/2004)(동조 제2항). 의무적 취학연령인 자 이외의 자에 대한 기초교육은 제46조에서 규정한다(동조 제3항).

사전 및 사후학교활동은 제8장a에서 규정한다. 사전 및 사후학교활동에 적용되는 이 법에서의 그 밖의 규정은 제40조, 제41조, 제43조, 제44조 제2항 및 제3항이다.(Amendment 1136/2003)(동조 제4항).

제2조는 교육의 목적에 대해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 법에서 말하는 교육의 목적은 학생이 인격을 도야하고 윤리적인 책임감이 있는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그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유아교육의 일부분으로서 예비기초교육의 목적은 아동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제2조 제1항). 교육은 문화적 생활과 사회의 평등을 증진해야 하며, 교육에 참여하거나 자신의 삶을 계발하는데 있어 학생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요건을 구비케 할 수 있어야 한다(동조 제2항). 교육의 목적은 또한 교육부문에서의 적절한 형평이 국가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동조 제3항).

제3조는 교육기반에 대해 정하고 있다. 교육은 이 법에 따라 통합된 국가핵심 교육과정에 의하여 규율된다(제3조 제1항). 학생이 건전한 성장 및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은 학생의 나이와 능력에 따라 주어진다.(Amendment 477/2003)(동조 제2항). 교육을 제공하는 자는 학생의 부모/보호자와 협력해야 한다(동조 제3항).

2. 지방정부의 역할과 의무

지방자치단체, 즉, 지방정부는 학생들에게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1차적 책임자이다. 따라서 기초교육법 제2장은 교육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과 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4조는 기초교육과 예비기

초교육을 제공할 지방정부의 법적 의무에 대해 정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의무적 취학연령인 아동에게 기초교육을 행할 의무와 의무교육에 선행하는 기간 동안의 예비기초교육 의무를 진다. 또한 지방정부는 제2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연장된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아동에게 예비기초교육을 행할 의무를 지며, 제27조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것보다 1년 늦게 기초교육을 시작한 아동에게 예비기초교육을 행할 의무를 진다. 지방정부는 이 항에서 언급한 서비스를 단독으로 또는 다른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제공하거나, 제7조 및 제8조에서 언급한 기초교육제공자로부터 서비스를 구매하여 제공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지방정부는 공적 또는 사적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예비기초교육 서비스를 구매하여 제공할 수 있다. 지방정부는 획득한 서비스가 이 법에 맞게 마련된 것임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제4조 제1항).

제1항에서 규정한 협력 제공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방정부는 자치적 컨소시엄을 설치할 수 있다. 교육제공자에 관한 조항은 자치적 컨소시엄에도 적용된다(동조 제2항). 영역 내에 병원이 위치해 있는 지방정부는 환자인 학생을 그의 건강과 그 밖의 환경이 허락하는 한도까지 교육할 책임이 있다(동조 제3항). 핀란드어와 스웨덴어를 하는 거주자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정부는 양 언어그룹 모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기초교육과 예비기초교육을 행할 책임이 있다(동조 제4항).

제5조는 그 밖의 교육 및 활동에 대해 정하고 있다.⁶⁶⁾ (Amendment 1707/2009) 지방정부는 기초교육 준비 지도, 자발적 추가기초교육 및 7학년 ~ 9학년인 자에게 융통성 있는 기초교육 내에서의 활동을 제공할 수 있다. 지방정부는 의무적 취학연령인 자 이외의 자에게도 기초교육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제5조 제1항). 융통성 있는 기초교육 내에서의 활동에 관한 추가적인 규정은 부령으로 제정되어야 한다(동조 제2항).

66) 2009년 개정되었다.

제6조는 학교의 배정에 대해 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생의 주거지, 학교의 위치, 그 밖의 교육장소, 대중교통수단을 고려하여 학생이 가능한 한 안전하고 가깝게 학교에 통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예비기초교육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아동들의 어린이집에 대한 접근성이 고려되어야 한다(제6조 제1항).

지방정부는 의무적 취학연령인 아동 및 이 법에 따라 교육을 받는 자에게, 인근학교를 배정하거나 또는 지방정부에 교육할 의무가 부과되고 있는 그의 모국어로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이 제공되는 그 밖의 적절한 장소를 배정해야 한다. 예비기초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에게도 유사한 기준을 충족하는 어린이집 또는 그 밖의 적절한 교육시설을 교육장소로 배정해야 한다. 교육 제공에 관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방정부는 수업 지도언어의 변경이 없도록 하여 교육의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동조 제2항).

아동은 부모/보호자의 동의가 없으면, 제31조 제3항에 따라 수업료가 부과되는 교육이나 지방정부의 결정 또는 인가에 따라 제공되는 특정한 윤리적 또는 교육적 체제를 따르는 교육을 받아서는 안된다(동조 제3항).

3. 기타 교육제공자

제7조는 교육제공자로서 등록된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등록된 사단 또는 재단에 이 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교육을 할 것을 인가할 수 있다. 이러한 인가는 특정한 교육적 또는 문화적 필요 충족을 위하여 법에서 요구하는 경우와 교육이 제공되는 분야에서 교육제공자와 지방정부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만 주어진다. 교육제공자가 위에서 언급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외국어를 사용한 교육, 특수교육, 특별한 이데올로기에 의한 교육, 의무적 취학연령에 달한 아동 이외의 자를 위한 교육을

위하여, 지역 또는 국가의 교육적이거나 문화적인 요구를 이유로 하여 인가가 주어질 수 있다. 또한 인가는 해외에서 제공되는 교육을 위하여 주어질 수도 있다(제7조 제1항).

인가의 조건으로 신청자는 교육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적, 재정적인 전제조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한다. 기초교육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제공되어서는 안된다(동조 제2항). 제1항에 규정된 인가를 함에 있어서는 교육이 제공되는 지방자치단체, 수업 지도언어, 특유의 교육목표, 교육방식, 교육제공과 관련된 그 밖의 필요조건이 결정되어야 한다. 교육제공 인가의 변경은 주무부에 의하여 결정된다(동조 제3항).

예비기초교육을 제공하도록 인가받은 교육제공자는 공적 또는 사적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예비기초교육 서비스를 구매하여 제공할 수 있다. 교육제공자는 구매한 서비스가 이 법에 맞게 마련된 것임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동조 제5항).

제8조는 정부의 역할과 의무에 대해 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 법에서 규정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교육의 제공 및 그 운용의 종료는 제7조 제2항 ~ 제4항에 따라 주무부에 의하여 결정된다(제8조).

4. 교 육

제9조는 교육기간에 대해 정하고 있다. 기초교육 교육과정의 기간은 9년이다(제9조 제1항). 예비기초교육과 자발적 추가기초교육의 기간은 1년이다. 제2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연장된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아동에게 주어지는 특수교육으로서의 예비기초교육 기간과 제10조 제4항에 따라 주무부에 의해 인가된 외국어 교육에서의 예비기초교육의 기간은 2년이다(동조 제2항). 이민자들의 기초교육 준비 지도의 기간은 1년 교육과정에 상응해야 한다(동조 제3항).

제11조는 교육내용에 대해 정하고 있다. 기초교육 교육과정은 제14조에 의하여 규정된 대로 다음의 핵심 과목을 포함해야 한다. : 모국어, 문학, 제2국어, 외국어, 환경연구, 건강교육, 종교교육 또는 윤리, 역사, 사회연구,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리, 체육, 음악, 예술, 기술, 가정. 제14조에 의하여 규정된 대로, 교육은 서로 다른 범위의 교육과정에 기반한다.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특유의 교육목표를 부여받은 기초교육제공자는 이 항의 내용에 기속되지 않는다(제11조 제1항).⁶⁷⁾

학생은 제1항에서 언급한 과목 이외에도 기초교육을 위해 적합한 과목에 대해서 교육과정에서 결정된 대로 학습할 수 있다. 이러한 과목은 부분적이거나 전적으로 선택에 맡겨져 있다(동조 제2항). 학생에게는 가이드상담이 주어져야 한다(동조 제3항). 이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비기초교육, 자발적 추가교육, 기초교육을 준비하는 교육에 대해서는 제14조에 의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동조 제4항).

제12조에서는 모국어에 대해 정하고 있다. 모국어로서, 학생은 계속적인 수업 지도언어로 사용할 핀란드어, 스웨덴어 또는 사미어를 배워야 한다(제12조 제1항). 모국어로서, 학생은 또한 Roma어, 수화 또는 학생의 모국어인 그 밖의 다른 언어를 배울 수 있다(동조 제2항).

제13조는 종교교육 및 윤리에 대해 정하고 있다. 기초교육제공자는 다수 학생의 종교에 따른 종교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에 종교교육은 다수의 학생이 속하는 종교단체에 맞게 마련된다. 이러한 종교단체에 속하지 않는 학생도 부모/보호자가 그러한 사정을 기초교육 제공자에게 통지한 후에는 상기의 종교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제13조 제1항).

제1항에 언급된 종교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기독교루터교회 또는 그리스정교회에 속하는 3명 이상의 학생은 자신의 종교에 따른 교육을 받

67) 2001년 개정된 조항이다.

는다(동조 제2항). 제1항에 언급된 종교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제2항에서 언급한 종교단체 이외의 단체에 속하는 3명 이상의 학생은, 그들의 부모/보호자가 요청한 경우에 그들 자신의 종교에 따른 종교교육을 받는다(동조 제3항).

하나 이상의 종교단체에 속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그의 부모/보호자는 학생이 어느 종교교육에 참여할지를 결정해야 한다(동조 제4항). 어느 종교단체에도 소속되지 않아 제1항에 따른 종교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은 윤리를 학습한다. 종교단체에 소속되어 있기는 하지만 자신의 종교에 따른 종교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은 그의 부모/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윤리를 학습한다. 기초교육제공자는 적어도 3명의 학생이 윤리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 윤리교육을 해야 한다(동조 제5항). 어떠한 종교단체에도 소속되지 않은 학생은 부모/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초교육제공자에 의하여 행해지는 종교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종교교육은 학생의 양육 및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명백히 그 학생의 종교적 신념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동조 제6항).

제14조는 수업시간 분배 및 핵심 교육과정에 대해 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국가목표를 결정해야 한다. 정부는 다양한 과목 및 그 대상집단에 대한 수업시간의 분배, 수업시간 분배에 대한 가이드상담(시간의 분배)도 결정한다(제14조 제1항).

국가교육위원회는 다양한 과목, 교육과정 전반의 주제, 가이드상담, 이 법에서 언급한 그 밖의 교육에 대한 목표 및 핵심내용을 결정해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홈스쿨 협력 및 학생복지의 기본원리도 지방교육권한의 범위(핵심 교육과정)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동조 제2항). 예비기초교육과 관련하여, 제1항에서 언급한 수업시간 분배의 결정은 사회보건부의 협력을 받아 교육부에 의해 준비되어야 한다(동조 제3항).

제15조는 교육과정에 대해 정하고 있다. 교육제공자는 이 법에서 규정한 교육을 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채택해야 한다. 교육과정은 핀란드어, 스웨덴어, Saami어로 이루어지는 교육과 필요에 따라 그 밖의 다른 언어로 이루어지는 교육 사이에 개별적으로 채택되어야 한다(제15조 제1항).

핵심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제1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정도로 교육과정이 지방사회보건집행 당국의 협력을 받아 작성되어야 한다. 교육제공자는 또한 핵심 교육과정에서 규정한 홈스쿨 협력을 위한 조직 및 학생복지를 위한 조직을 결정해야 한다(동조 제2항)

주무부에 의한 인가를 받으면, 기초교육과 차상위 교육을 위한 공통 교육과정이 채택될 수 있으며 기초교육 교육과정에 직업교육을 포함할 수도 있다(동조 제3항).

제16조는 보충수업 및 시간제 특수교육에 대해 정하고 있다. 일시적으로 학업에 뒤쳐졌거나, 학습에 있어 단기간의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보충수업을 받을 권리가 있다(제16조 제1항). 학습 또는 등교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은 시간제 특수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동조 제2항).

제16조a는 강화된 지원에 대해 정하고 있다. 학습 또는 등교에 정기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학생은 그에 맞추어 고안된 학습계획에 따라 강화된 지원을 제공받아야 한다. 학습계획은 그렇게 하지 않을 명백한 이유가 없다면 해당 학생, 부모, 보호자, 필요한 경우 그 외 해당 학생의 법정대리인과 협력하여 마련되어야 한다. 강화된 지원은 특히 제16조, 제31조, 제31조a에서 언급한 학생지원의 방식과 필수교육장치를 포함한다. 강화된 지원 및 학습계획의 중요 내용은 핵심 교육과정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제16조a 제1항).

강화된 지원의 개시 및 제공은 제31조a 제1항 및 제2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학생복지 업무에 대한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교육학적 평가에 기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학생에게 제공되는 지원은 학습계획에

기록되어야 한다. 강화된 지원은 학생의 발달수준과 개인적 필요를 고려하여 양적, 질적으로 적절하게 주어져야 한다(동조 제2항).

5. 평 가

제21조는 교육평가에 대해 정하고 있다. 교육평가의 목적은 교육발달을 지원하고 학습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 법의 목적이 성취되었는지를 보장하는 것이다(제1항). 교육제공자는 자신이 제공한 교육 및 그 효과를 평가하고, 그 운용에 대한 외부평가에 참여해야 한다(제2항).

외부평가를 위하여 독립적인 전문가집단으로서 교육부 산하 교육평가협의회를 두어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4조에서 규정한 수업시간 분배 및 핵심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의 세부교과 학습성취도에 대한 평가를 감독하는 임무를 맡는다. 교육부는 외부교육평가 및 학업성취도 감독평가에 대한 평가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평가협의회의 소관사항, 구성, 운용조직과 교육평가협의회에 의하여 처리되는 문제의 준비 및 이행, 평가계획의 내용에 관한 규정은 부령으로서 제정되어야 한다(제3항).

제22조는 학생평가에 대해 정하고 있다. 학생평가의 목적은 학습을 지도 및 고양하며, 자기평가를 위한 학생의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학생의 학습, 작업, 행동은 다양하게 평가되어야 한다(제1항). 학습을 통한 성과 및 진보에 대한 평가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발한 명령과 규칙에 의하여 통제되어야 한다. 보고카드에 기록되는 정보는 국가교육위원회의 판정을 받아야 한다(제2항).

학생의 부모/보호자가 전반적인 학업의 성과 때문에 해당 학생의 유급시킬 생각을 품고 있지 않은 경우, 해당 부모/보호자에게는 그 문제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청문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제3항).

6. 학습시간

제23조는 학년도에 대해 정한다. 기초교육에 있어서 학년도는 8월 1일부터 다음년도 7월 말일까지로 한다. 1학년도는 190일의 수업일수로 구성된다. 특별한 이유로 인하여 수업일수를 초과해야할 경우에는 주무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에 속하는 독립기념일(Independence Day), 예수공현축일(Epiphany), 메이데이(the First of May)는 해당 학년도의 수업일수에서 제외한다(제1항).

피치 못할 이유로 법정된 수업일수를 채우는 것이 불가능하고 교육과정의 목표가 달리 달성되기 어려운 경우에 상실된 수업일수는 학년도 수업일수에서 최대 6일을 추가하는 것으로 복원되어야 한다(제3항).

제24조는 학생의 학습강도에 대해 정하고 있다. 기초교육을 행함에 있어 학생의 학습강도는 학교에서 소비하는 시간 이외에 휴식, 레크레이션, 취미를 즐기고, 통학 및 과제를 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허락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제1항). 학생이 받게 되는 매일, 매주의 기초교육 학습강도는 명령에 의해 제정되어야 한다(제2항).

7. 기타조항

제40조는 개인정보의 비밀 및 처리에 대해 정하고 있다. 교육제공에 책임이 있는 조직의 구성원, 제37조에서 언급한 자, 학교 사회복지사, 학교 정신분석의사, 교생은 이 법에서 규정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알게 된 학생, 이 법에서 언급한 직원, 또는 그들 가족 구성원의 신상 및 경제상황을 외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41조는 정보에 대한 접근에 대해 정하고 있다. 의무를 행함에 있어서 교육제공자는 국가 또는 지방정부로부터 교육을 계획하고 제공하는데 필요한 통계적인 정보 및 그에 상응하는 정보를 획득할 권리가 있다(제1항). 정보에의 접근을 요청받는 경우 교육제공자는 교육평

가 및 발달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국가교육 당국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보, 통계 및 감독 모음집을 국가교육 당국에 제공해야 한다(제2항).

제43조는 자금조달에 대해 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 규정한 예비기초교육과 기초교육에 대한 자금조달은 지방기초 서비스를 위한 정부이송법(1704/2009)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예비기초교육과 기초교육의 운용자금에 대한 그 밖의 자금조달은 교육 및 문화 자금조달에 관한 법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사전 및 사후학교활동을 위한 자금조달은 교육 및 문화 자금조달에 대한 법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제1항). 기초교육법에 의한 교육 및 활동의 자금조달에 대한 국가 보조금, 설립 및 건축 프로젝트에 대한 국가 보조금은 교육 및 문화 자금조달에 관한 법 규정에 따라 국가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여될 수 있다(제2항).

제44조는 학생에게 부과되는 비용에 법적 근거에 대해 정하고 있다.

제45조에 따르면 학생의 부모/보호자가 의무교육의 성취의 보장의무를 게을리 하는 경우에 의무교육 성취의 보장의무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받는다.

제46조에 따르면 의무적 취학연령인 학생 이외의 자를 위한 교육이 이루어진다. 제47조에 따라 도서관, 동아리, 교육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그 밖의 활동도 기초교육과 함께 마련될 수 있다.

제47조a는 학생협의회에 대해 정하고 있다.

8. 사전 및 사후학교활동

제48조a에 따르면 사전 및 사후학교활동의 목적은 학교와 가정의 교육, 아동 정서생활의 발달, 윤리성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사전 및 사후학교활동은 아동의 복지 및 사회적 평등을 증진하고, 배제는 방지하되 포함은 증진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제48조b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전 및 사후학교활동을 제공하고 수요자가 될 수 있다. 사전 및 사후학교활동은 각 참여 학생에게 1학년도에 570시간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은 주로 주중에 7시간 ~ 17시간 동안 제공될 수 있다.

제48조c에 따르면 사전 및 사후학교활동은 제48조a에서 결정된 목적의 성취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정부는 제공 또는 획득된 사전 및 사후학교활동을 평가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외부평가에 참여해야 한다. 평가의 결과는 공표되어야 한다.

제48조d에 따르면 사전 및 사후학교활동에 참가하는 아동에게는 간식이 제공되어야 한다. 사전 및 사후학교활동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치료는 해당 아동에게 무상으로 제공된다.

제48조e에 의하면 사전 및 사후학교활동은 교육제공의 형식을 고려하여 충분한 수의 교직원을 확보해야 한다. 사전 및 사후학교활동의 교사에게 요구되는 자격은 법령에 의하여 제정되어야 한다.

제48조f는 비용에 대해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매월 사전 및 사후학교활동에 대한 비용이 부과된다. 지방정부는 사전 및 사후학교활동에 부과되는 비용을 결정해야 하는데, 비용은 570시간 기준 최대 60유로이고, 760시간 기준 최대 80유로이다. 비용은 아동이 사전 및 사후학교활동에 참가하는 동안에는 매월 부과된다. 사전 및 사후학교활동이 한 달 동안 10일이내로 제공된 경우 비용은 절반만 부과되어야 한다. 아동이 질병으로 인하여 10일이상 사전 및 사후학교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도 비용은 오직 절반만 부과되어야 한다. 질병으로 인하여 한 달 내내 결석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비용도 부과되어서는 안된다. 만약 아동이 그 밖의 다른 이유로 한 달 내내 사전 및 사후학교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용의 절반이 부과되어야 한다. 사전 및 사후학교활동에 참가하는 데 그 외 어떠한 다른 비용도 부과되어서는 안된다.

제 3 절 대학법

I. 체 계

대학법(Universities Act, 558/2009)은 총 11장 93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일반조항(제1조-제5조)
제2장 연구와 교육(제5조-제12조)
제3장 조직(제13조-제30조)
제4장 교직원 및 행정 언어(제31조-제35조)
제5장(제36조-제47조)
제6장(제48조-제59조)
제7장 대학 재정(제60조-제67조)
제8장 헬싱키 대학교 관련 특별 규정 (제68조-제75조)
제9장 아보 아카데미 대학교 특별 규정(제76조-제93조)

II. 주요내용

대학법 제3조는 대학의 자율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대학은 고등교육과 예술교육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자율권을 갖는다. 자율권은 내부 행정에 속하는 문제를 결정할 권리를 수반한다(제3조 제1항). 이와 관련한 법안을 제정하기 위해 대학은 이와 관련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갖는다(제3조 제2항).

제5조는 국공립대학의 법적 지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국공립대학은 독립된 법인이다(제5조 제1항). 국공립대학은 스스로 책임을 지고, 그 자신의 이름으로 권리를 취득하고 동산 및 부동산을 소유한다. 대학은 제2조에 명시된 사명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영리활동을 추구

할 수 있다(제5조 제2항). 국공립대학은 자신의 책무에 대하여 자신의 기금으로 법적 책임을 지고 법정에서 소송상 방어를 하며 권리를 추구할 수 있다(동조 제3항).

그리고 제8조는 무상교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대학 학위에 따르는 교육과 대학 입학에 위한 시험은 이 법에 명시되지 않는 한 무상으로 이루어진다(제8조 제1항). 하지만 핀란드와 스웨덴이 아닌 다른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사람은 유상의 국제 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언급된 것 이외의 활동을 위해서 대학은 이에 대한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동조 제2항). 이 법에 의해 규정된 부과 가능한 비용이 기한 내에 납부되지 아니하면 이자법(Interest Act) (633/1982)의 조항에 근거하여 납부 기한부터 계속하여 지연 손해금을 연리로 부과할 수 있다. 이자의 납부는 세금과 비용에 관한 강제집행법(Act on the Enforcement of Taxes and Charges) (706/2007)에 근거하여 법원의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 절차에 따른다(동조 제3항).

그리고 제9조는 맞춤형교육을 정하고 있다. 대학은 핀란드 정부, 다른 국가, 국제기구, 핀란드 또는 외국 공공기업, 재단이나 사기업이 지원하고 임명한 학생들을 위해 학위 교육을 마련할 수 있다(제9조 제1항)고 하여 맞춤형교육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다만 맞춤형 교육은 유럽경제지역이나 유럽 공동체 법 또는 유럽 공동체 및 그 구성 국가와 이와 계약을 맺은 상대방에 의해 정해진 조약 하의 유럽 연합 시민과 동등하게 취급되는 자를 위해서는 마련되지 않을 수도 있다(동조 제2항)

제41조는 학생의 학습권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학생은 학사 및 석사 학위를 위해 대학 규정과 커리큘럼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학문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제41조 제1항). 그리고 학생들은 제41조a에 따라 안전한 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권리를 갖게 된다. 학습권의 확대(제42조), 학습권의 박탈(제43조), 제43조a 학습권의 취소 (제43

조a), 학습권의 회복(제43조c)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학생자치조직인 학생회의 근거조항은 제46조이다.

제49조는 정부 재정 지원의 배분 기준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교육문화부 장관은 국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 법에 실린 대학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책정된 범위의 자금의 대학 지원을 승인한다(제49조 제1항).

제 4 장 핀란드 교육복지법제연구의 시사점

제 1 절 교육복지와 사회통합

핀란드 교육복지의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교육복지를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모든 국민에게 기초교육과정에서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사회구성원들이 낙오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핀란드의 종합학교 개혁은 평등국가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방책이었다. 이러한 종합학교에서의 교육은 기초교육법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

기초교육법은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의 법적 근거일 뿐만 아니라, 학생의 복지에 대해서도 규율하고 있는 대표적인 교육복지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의해 학생의 통학수단과 숙박시설에 있어서도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학생에 대한 맞춤형교육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어 소외계층지원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종합학교체제는 평등의 원리를 제대로 구현하는 교육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⁶⁸⁾

핀란드는 교육복지를 통해 보편적 공동체를 지향함과 아울러 사회통합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핀란드에서도 신자유주의의 기조가 점차 강해짐에 따라 소수자 및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에 대한 배려를 지금과 마찬가지로 유지할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이다.

제 2 절 교육복지의 다양한 지원제도

핀란드에서는 학생에게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교육제도와 복지정책의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학생지원교육

68) 김경자, “핀란드 종합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특징 고찰”, 교육과정연구 제29권 제1호, 2011, 129면.

과 경제적 지원이 잘 갖추어져 있다. 학생지원교육으로는 개인맞춤형 교육, 특수교육지원, 보충강화교육, 파트타임 특수교육, 연장교육의무 등이 있다. 이와 같은 학생지원교육을 통해 교육에서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배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 지원책으로는 학습지원수당·주거지원비·학업비용 대출 등의 학생지원금, 교통비 지원, 식비 지원 등이 있다. 이를 통해 부모의 소득·계층과 무관하게 최소한의 균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하고 있다.

교육복지와 사회복지의 철저한 연계를 통해 교육은 개인의 과업이 아닌 국가의 과업이라는 점을 국민들에게 주지시켜주고 있다고 하겠다.

제 3 절 무상교육 확대의 필요성

핀란드 교육복지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은 취학전 교육인 예비학교, 의무교육과정인 종합학교 이후에도 고등학교·대학교과정에서도 무상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의무교육과정에서는 일체의 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고등학교에서는 수업비를 면제 받고 있다. 교과서 및 학습도구에 관한 비용은 학생이 부담한다. 대학교에서는 등록금이 무상이고, 학업지원금과 주택보조금도 지원을 받는다.

이처럼 무상교육을 통해 모든 국민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해주고 있다. 교육비용의 문제로 인해 국민들이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핀란드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면적 무상교육은 현재 한국의 교육계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 급식, 무상교육의 확대 및 대학교 반값 등록금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사교육비의 증가로 인한 교육격차의 확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국민들의 교육비용 부담을 덜고자 다양한 무상교육의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핀란드의 교육복지법제를 보자면, 의무교육이 아닌 고등학교교육과 대학교교육에서도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시스템을 그대로 따르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핀란드와 한국은 국가의 규모, 인구수, 경제적 여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배분 문제 등에 있어서 상당히 다르기 때문이다.

다만 핀란드가 무상교육을 통해 국민들의 교육수준을 높여왔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적자원이 중요한 국가에서는 전 국민이 충분한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평등하게 보유하는 것이 그 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 따라서 의무교육과정 이후에도 국가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무상교육의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현실적으로 대학교육의 무상교육은 불가능하더라도,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무상교육화는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이를 위해 무상교육의 범위와 정도, 교육재정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분담비율 등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제 4 절 소외계층지원교육의 필요성

핀란드 교육복지의 기본철학은 소수자에 대한 배려와 차별의 금지이다. 사회 구성원 누구도 낙오시키지 않는 시스템을 교육복지를 통해 제도화하고 있다. 장애학생, 학습부진학생, 이민자학생들에 대한 배려를 통해 그들이 학업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다. 개인별 맞춤형 교육, 이중언어 교육 등을 통해 교육에 있어서의 형평성을 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외계층지원교육을 제대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철학의 확고한 정립과 근본적인 사고의 전환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제도의 이식은 힘든 문제이다. 과연 한국에서 이중언어교육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향후 한국사회에서는 다문화가정이 빠른 속도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들에 대한 교육적 배려가 중요한 사회적 쟁점이 될 때가 올 것이고, 핀란드의 교육제도는 여러모로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장애학생이나 학습부진학생처럼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성도 있다. 따라서 ‘교육복지법’의 제정을 통해 지원대상의 범위와 정도를 단일법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 5 절 우수한 교사의 중요성

핀란드교육이 경쟁력을 갖추게 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는 우수한 교사라는 평가가 있다.⁶⁹⁾ 핀란드 교사양성 시스템의 핵심은 우수한 인재를 모집해 훌륭하게 양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⁷⁰⁾ 핀란드의 교육체제는 전문가적 소양을 갖추고, 학생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는 교사를 중시한다.⁷¹⁾ 그리고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가로서의 책무를 인정해주는 시스템이 제도화되어 있다.

핀란드의 교사교육은 연구중심으로 이루어지고, 교사 지망생 중 10%만이 교사가 될 수 있을 정도로 교사가 되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⁷²⁾ 핀란드 교사의 연봉은 \$ 46,000를 넘지 않는 선이어서 1인당 국민소득에 미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에 대한 선호도가

69) Pasi Sahlberg, “Lessons from Finland”, *American Educator*, 35(2), 2011, p. 34.

70) Ibid., p. 35.

71) Ibid., p. 35.

72)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편), 앞의 책, 110면

높은 것은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품위·직업적 안정성·사회의 공공선에 기여하는 윤리적 이유때문이라고 한다.⁷³⁾

한국의 교육제도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수한 교사들을 확보해야 한다. 전문성과 윤리성을 함께 갖춘 우수한 인재들을 훌륭한 교사로 양성해야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핀란드에서 교사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하고 있는 교사양성제도는 여러모로 참고할 점이 많다.

제 6 절 공교육의 정상화

공교육이 정상화되지 않고서, 교육복지의 확대는 요원하다. 핀란드의 교육체제는 전적으로 공교육에 의존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국민들은 공교육 시스템 내에서 평등한 교육을 받는다. 기초교육과정에서는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고, 고교과정부터 일반고와 직업고로 나뉘어 진학을 한다. 대학과정도 종합대학교와 폴리테크대학으로 구분되어 있다. 철저하게 공교육 시스템 내에서 학생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배양하고, 사회에 진출하는 데 요구되는 지식과 자격 요건 등을 갖추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수단을 통해 학생들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도 공교육을 정상화시키지 않고서는 난맥처럼 얽혀 있는 다양한 교육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학교의 역할과 책임을 법률에 세분화·명료화하고,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교육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집권세력이 바뀔 때마다 교육정책의 기조가 변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재양성을 맡을 직업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핀란드와 한국은 사회의 철학과 가치에 있

73) 정도상, 「핀란드 교사양성과 교사연수의 현황과 시사점」, 교육개발원, 2013, 4면.

어서 많은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핀란드처럼 직업교육을 확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공교육이 산업현장에 필요한 역군들을 양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은 유념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소수자에 대한 배려를 통한 평등교육의 이념 실현일 것이다.

제 5 장 결 론

핀란드는 적은 인구, 러시아와 인접한 지리적 배경, 자원과 경작지의 부족 등으로 인해 국가경쟁력을 갖추기 힘든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경쟁력⁷⁴⁾, 국제학력평가, 국가청렴도⁷⁵⁾ 등의 각종 지표에서 항상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경쟁력의 배경에는 교육이 있다. 교육이 인재양성의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교육과 복지가 일체화되어 교육을 통해 사회통합을 실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진화된 교육 시스템과 차별화된 교육철학을 토대로 끊임 없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핀란드의 교육제도는 한국의 교육제도의 발전을 위해 연구할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핀란드의 교육복지법제 중 무상교육과 소외계층지원 교육을 중심으로 관련 법제를 소개·분석하였다.

한국의 교육계에서 최근 가장 논란이 된 쟁점은 무상교육일 것이다. 교육부는 당초 2014년부터 읍면·도서지역에 고교무상교육을 하고 도시 지역에는 교과서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7년도에 전면 무상교육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지난 9월 26일 발표한 교육 분야 2014년도 예산안을 보면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예산은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5000억원 가량을 요구했으나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고교 무상교육은 대선 공약상으로는 5년간 3조 1000억원이 투입돼 확대될 예정이었다. 교육부의 교부금이 중심 예산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교부금 예산이 부족하다면서 기획재정부에 국고 지원을 요청했다.

74) 세계경제포럼(WEF)의 2013년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스위스와 싱가포르에 이어서 제3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25위를 기록했다.

75) 2012년 국가청렴도조사에서 제1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거부해 결국 2014년 예산안에서 제외됐다. 또한 정부는 임기 5년간 4000억원을 투입해 대학 학자금 대출금리를 실질적인 0%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저금리의 여파로 3.9%의 대출 이자율이 2.9%로 낮아진 것을 이유로 백지화시켰다.⁷⁶⁾

국가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공약을 내세웠다가 현실적인 이유로 공약이 취소되고 있는 형국이다. 향후 복지정책의 추이는 결국 국가의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14년 예산안 중 복지예산액은 정부 약 105조 9000억원이다. 전체 예산액 중 29.6%에 이를 정도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방대한 복지예산 가운데 어느 정도를 교육복지에 투입할 지는 사회각계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야 할 것이다.

이 시점에서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는 교육복지가 얼마나 한국사회에서 중요한가이다. 사교육비의 증가로 인한 가계부담의 심화와 출산율의 저하는 향후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주요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활동인구를 축소시키고, 중산층이 붕괴된다면 국가적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교육복지의 확대이다. 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해줌으로써 실질적 소득향상을 이끌어내고, 자식 양육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이는 교육복지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를 어떻게 이루어나갈 것인가의 문제가 될 것이다. 교육복지의 개념은 매우 광범위하지만, 본 연구는 무상교육과 소외계층지원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이에 비추어 봤을 때 핀란드의 교육복지법제는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핀란드는 장기간의 논의와 토론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교육복지관련 법제와 제도를 정비하였다. 교육복지제도는

76) 서울신문, “[2014 예산안] 복지예산 첫 100兆 시대… 기초연금·무상교육 등 대표 공약 ‘후퇴’”, 2013.9.27일자.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비롯해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학교체제와 학교 운영, 교육재정, 교원제도, 교육과정, 평가와 입시 등이 세밀하게 설계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소속기관이나 독립적인 권한을 보장하는 기관(국가교육위원회 등), 단위학교, 교사 등이 각각 자율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그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즉, 핀란드의 교육제도 자체가 거대한 교육복지 체제라고 할 수 있다.⁷⁷⁾ 각종 다양한 지원책으로는 학생에 대한 교육적 지원과 경제적 지원이 모두 해당된다. 무상교육의 범위와 내용(수업료면제, 학습지원수당, 주거비지원, 학업지용대출 등), 소외계층교육(특수교육, 이중언어교육 등) 등이 구체적인 교육복지의 내용이다.

이러한 핀란드의 교육복지 체제를 고려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특수성도 생각해보아야 한다. 국가마다 재정여건, 경제적 상황, 법제의 특성, 복지정책, 국민적 여론, 문화적 요인, 사회적 환경 등에 있어서 차이점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핀란드의 교육제도를 모방하여 그대로 이식해야 한다고 단편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다만 핀란드의 교육복지법제와 교육제도에서 정책적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은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양한 학생지원수단을 통한 평등한 교육의 보장, 낙오자를 배려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 등은 배울 점이 많다. 또한 미래사회에 대한 적응력과 대응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핀란드의 직업교육도 눈여겨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핀란드 교육복지체제의 특성들은 향후 교육정책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고,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정책입안자에게 달려 있다.

그리고 모든 사회구성원이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신념이 핀란드의 중요한 교육철학인데, 이는 핀란드 교육복지법제의

77) 이덕난, 「핀란드 교육제도의 특징 및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2013, 74면.

제 5 장 결 론

밑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교육은 국가와 사회의 인재를 양성하는 역할도 담당하지만, 한편으로는 사회통합의 기능도 맡는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역할을 균형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교육철학의 확립이 필요하고, 이는 헌법정신에 입각해야 한다. 헌법정신에 바탕한 확고한 교육철학과 신념을 현실에 반영시킬 수 있는 교육복지법제의 마련이 시급하다.

참고문헌

- 권충훈/김훈희, “핀란드 교육의 성공 요인 분석과 논의”, *교육사상연구* 제23권 제3호, 2009.
- 김경자, “핀란드 종합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특징 고찰”, *교육과정연구* 제29권 제1호, 2011.
- 김병찬, “핀란드 교육복지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교육비평* 제30호, 2011.
- _____, “핀란드의 교사양성교육 프로그램의 특성”, *비교교육연구* 제23권 제1호, 2013.
- _____, “핀란드의 교육복지와 관련법제”, *북유럽의 교육복지 법제 제3차 워크숍 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2013.
- 성열관, “핀란드 교육 성공 요인의 중층 구조 분석”, *비교교육연구* 제19권 제3호, 2009.
- 이덕난, 「핀란드 교육제도의 특징 및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2013.
- 정도상, “핀란드의 교육복지”, *북유럽의 교육복지 법제 제2차 워크숍 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2013.
- 정도상, 「핀란드 교사양성과 교사연수의 현황과 시사점」, 한국교육개발원, 2013.
- 리차드 D. 루이스, 박미준(역), 「미래는 핀란드에 있다」, 살림, 2008,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편), 「핀란드 교육 혁명」, 살림터, 2010.
- 후지이 니에 메라 미도리/타카하기 무츠코, 전국사립호이쿠엔연맹 교육국제교류운영위원회(편), 박찬영/ 김영희(역), 「핀란드에서

- 배우는)행복한 아이 키우기 : 육아와 보육에서 시작되는 핀란드 교육』, 아침이슬, 2011.
- 핀란드 교육부, 홈페이지, <<http://www.minedu.fi/>>.
- 핀란드 인구통계청, 홈페이지,
<http://www.stat.fi/til/vaerak/index_en.html>.
- 핀란드 통계청, <http://www.stat.fi/ril/kjarj/2011/kjarj_2011_2012-02-16-tie-001-en.html>.
- Sahlberg, Pasi. “PISA in Finland: An Education Miracle or an Obstacle to Change?”, *Centre for Education Policy Journal*, 1(3), 2011.
- _____. “Lessons from Finland”, *American Educator*, 35(2), 2011.
- _____. “The Secret to Finland’s Success: Educating Teachers”, *Stanford University School of Education*, 2010.
- Finnish National Board of Education, 「Educational and Vocational guidance」, 『National Core Curriculum for Basic Education 2004』 (최종 검색일: 2013.9.30.) <http://www.oph.fi/download/47673_core_curricula_basic_education_4.pdf>.
- Liisa Heinämääki, Early Childhood Educationin Finland,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re for Welfareand Health STAKES, Jyvaskyla Satellite Office, 2010.
- OECD, Starting strong II: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educare, 2006.
- Ministry of Education and Culture, Administration of Basic and Upper Secondary Education, 2013.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licy in Finland, 2000.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 Finland, 2004.

[부 록]

기 초 교 육 법

기 초 교 육 법
628/1998
Amendments up to 1136/2010

제 1 장 적용 및 목적

제 1 조 적용

1. 이 법은 기초교육과 의무교육을 규정한다.
2. 이 법은 예비기초교육에 대해서도 규정한다. 이것은 의무교육에 선행하는 기간 동안 주로 행해지는데, 이미 기초교육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을 위한 자발적 추가기초교육, 이민자들의 기초교육 준비 지도, 그리고 사전 및 사후학교활동을 위한 것이다. 이 법에서 규정한 예비기초교육이 아동보육에 관한 법(36/1973) 제1조 제2항 또는 제3항이 규정한 어린이집에서 행해지는 경우, 예비기초교육은 아동보육에 관한 법 및 그에 따라 제정된 명령에도 어긋나서는 안된다.(Amendment 1136/2004)
3. 의무적 취학연령인 자 이외의 자에 대한 기초교육은 제46조에서 규정한다.
4. 사전 및 사후학교활동은 제8장a에서 규정한다. 사전 및 사후학교활동에 적용되는 이 법에서의 그 밖의 규정은 제40조, 제41조, 제43조, 제44조 제2항 및 제3항이다.(Amendment 1136/2003)

제 2 조 교육의 목적

1. 이 법에서 말하는 교육의 목적은 학생이 인격을 도야하고 윤리적인 책임감이 있는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그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유

[부 록]

아교육의 일부분으로서 예비기초교육의 목적은 아동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2. 교육은 문화적 생활과 사회의 평등을 증진해야 하며, 교육에 참여하거나 자신의 삶을 계발하는데 있어 학생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요건을 구비케 할 수 있어야 한다.
3. 교육의 목적은 또한 교육부문에서의 적절한 형평이 국가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제 3 조 교육기반

1. 교육은 이 법에 따라 통합된 국가핵심 교육과정에 의하여 규율된다.
2. 학생이 건전한 성장 및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은 학생의 나이와 능력에 따라 주어진다.(Amendment 477/2003)
3. 교육을 제공하는 자는 학생의 부모/보호자와 협력해야 한다.

제 2 장 교육제공자로서 지방정부

제 4 조 기초교육과 예비기초교육을 제공할 법적 의무 (Amendment 1288/1999)

1. 지방정부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의무적 취학연령인 아동에게 기초교육을 행할 의무와 의무교육에 선행하는 기간 동안의 예비기초교육 의무를 진다. 또한 지방정부는 제2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연장된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아동에게 예비기초교육을 행할 의무를 지며, 제27조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것보다 1년 늦게 기초교육을 시작한 아동에게 예비기초교육을 행할 의무를 진다. 지방정부는 이 항이 규정한 서비스를 단독으로 또는 다른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제공하거나, 제7조 및 제8조가 규정한 기초교육제공자로부터

서비스를 구매하여 제공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지방정부는 공적 또는 사적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예비기초교육 서비스를 구매하여 제공할 수 있다. 지방정부는 획득한 서비스가 이 법에 맞게 마련된 것임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Amendment 1288/1999)

2. 제1항에서 규정한 협력 제공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방정부는 자치적 컨소시엄을 설치할 수 있다. 교육제공자에 관한 조항은 자치적 컨소시엄에도 적용된다.
3. 영역 내에 병원이 위치해 있는 지방정부는 환자인 학생을 그의 건강과 그 밖의 환경이 허락하는 한도까지 교육할 책임이 있다.
4. 핀란드어와 스웨덴어를 하는 거주자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정부는 양 언어그룹 모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기초교육과 예비기초교육을 행할 책임이 있다.(Amendment 1288/1999)

제 5 조 그 밖의 교육 및 활동(Amendment 1707/2009)

1. 지방정부는 기초교육 준비 지도, 자발적 추가기초교육 및 7학년 ~ 9학년인 자에게 융통성 있는 기초교육 내에서의 활동을 제공할 수 있다. 지방정부는 의무적 취학연령인 자 이외의 자에게도 기초교육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2. 융통성 있는 기초교육 내에서의 활동에 관한 추가적인 규정은 법령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제 6 조 학교의 배정

1. 지방자치단체에서 학생의 주거지, 학교의 위치, 그 밖의 교육장소, 대중교통수단을 고려하여 학생이 가능한 한 안전하고 가깝게 학교에 통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예비기초교육의 경우에는

[부 록]

추가적으로 아동들의 어린이집에 대한 접근성이 고려되어야 한다.(Amendment 1288/1999)

2. 지방정부는 의무적 취학연령인 아동 및 이 법에 따라 교육을 받는 자에게, 인근학교를 배정하거나 또는 지방정부에 교육할 의무가 부과되고 있는 그의 모국어로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육이 제공되는 그 밖의 적절한 장소를 배정해야 한다. 예비기초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에게도 유사한 기준을 충족하는 어린이집 또는 그 밖의 적절한 교육시설을 교육장소로 배정해야 한다. 교육 제공에 관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방정부는 수업 지도언어의 변경이 없도록 하여 교육의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Amendment 1288/1999)
3. 아동은 부모/보호자의 동의가 없으면, 제31조 제3항에 따라 수업료가 부과되는 교육이나 지방정부의 결정 또는 인가에 따라 제공되는 특정한 윤리적 또는 교육적 체제를 따르는 교육을 받아서는 안된다.

제 3 장 그 밖의 교육제공자

제 7 조 교육제공자로서 등록된 사단 또는 재단

1. 정부는 등록된 사단 또는 재단에게 이 법에서 규정되고 있는 교육을 할 것을 인가할 수 있다. 이러한 인가는 특정한 교육적 또는 문화적 필요 충족을 위하여 법에서 요구하는 경우와 교육이 제공되는 분야에서 교육제공자와 지방정부 사이에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만 주어진다. 교육제공자가 위에서 규정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외국어를 사용한 교육, 특수교육, 특별한 이데올로기에 의한 교육, 의무적 취학연령에 달한 아동 이외의 자를 위

한 교육을 위하여, 지역 또는 국가의 교육적이거나 문화적인 요구를 이유로 하여 인가가 주어질 수 있다. 또한 인가는 해외에서 제공되는 교육을 위하여 주어질 수도 있다.

2. 인가의 조건으로 신청자는 교육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전문적, 재정적인 전제조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한다. 기초교육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제공되어서는 안된다.
3. 제1항에 규정된 인가를 함에 있어서는 교육이 제공되는 지방자치단체, 수업 지도언어, 특유의 교육목표, 교육방식, 교육제공과 관련된 그 밖의 필요조건이 결정되어야 한다. 교육제공 인가의 변경은 주무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4. 교육의 제공이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규정한 인가의 조건을 구비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교육이 이 법 및 이 법에 의하여 발하여진 법령에 반하여 제공되는 경우, 정부는 교육제공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5. 예비기초교육을 제공하도록 인가받은 교육제공자는 공적 또는 사적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예비기초교육 서비스를 구매하여 제공할 수 있다. 교육제공자는 구매한 서비스가 이 법에 맞게 마련된 것임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Amendment 1288/1999)

제 8 조 교육제공자로서 정부

1. 정부는 이 법에서 규정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교육의 제공 및 그 운용의 종료는 제7조 제2항 ~ 제4항에 따라 주무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제 4 장 교 육

제 9 조 교육기간

1. 기초교육 교육과정의 기간은 9년이다.
2. 예비기초교육과 자발적 추가기초교육의 기간은 1년이다. 제2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연장된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아동에게 주어지는 특수교육으로서의 예비기초교육 기간과 제10조 제4항에 따라 주무부에 의해 인가된 외국어 교육에서의 예비기초교육의 기간은 2년이다.
3. 이민자들의 기초교육 준비 지도의 기간은 1년 교육과정에 상응해야 한다. (Amendment 1037/2008)
4. 교육기간에 관한 추가적인 규정은 명령에 의하여 발하여 져야 한다.

제10조 수업 지도언어

1. 수업 지도언어와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수업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핀란드어 또는 스웨덴어이다. 수업 지도언어는 또한 Saami어, Roma어, 수화도 가능하다. 학생이 수업을 따라가는 데 있어 위험이 없다면 수업은 위에서 규정한 학생의 모국어 이외의 언어로도 행해 질 수 있다.(Amendment 1288/1999)
2. Saami를 주생활 근거지로 하기 때문에 Saami어에 숙달되어 있는 학생은 주로 Saami어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청각 손상을 입은 학생은 필요하다면 수화로 교육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3. 교육제공자가 제1항 및 제2항이 규정한 학생이 공부할 수 있는 수업 지도언어들 중 하나 이상의 언어로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 부모/보호자는 수업 지도언어를 선택해야 한다.

4. 추가적으로, 개별 교육그룹이나 개별 학교에서의 수업은 제1항이 규정한 것 이외의 언어로도 주로 또는 전부가 행해질 수 있다.

제11조 교육내용

1. 기초교육 교육과정은 제14조에 의하여 규정된 대로 다음의 핵심 과목을 포함해야 한다. : 모국어, 문학, 제2국어, 외국어, 환경연구, 건강교육, 종교교육 또는 윤리, 역사, 사회연구,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지리, 체육, 음악, 예술, 기술, 가정. 제14조에 의하여 규정된 대로, 교육은 서로 다른 범위의 교육과정에 기반한다.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특유의 교육목표를 부여받은 기초교육제공자는 이 항의 내용에 기속되지 않는다.(Amendment 453/2001)
2. 학생은 제1항이 규정한 과목 이외에도 기초교육을 위해 적합한 과목에 대해서 교육과정에서 결정된 대로 학습할 수 있다. 이러한 과목은 부분적이거나 전적으로 선택에 맡겨져 있다.
3. 학생에게는 가이드상담이 주어져야 한다.
4. 이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비기초교육, 자발적 추가교육, 기초교육을 준비하는 교육에 대해서는 제14조에 의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

제12조 모국어

1. 모국어로서, 학생은 계속적인 수업 지도언어로 사용할 핀란드어, 스웨덴어 또는 Saami어를 배워야 한다.
2. 모국어로서, 학생은 또한 Roma어, 수화 또는 학생의 모국어인 그 밖의 다른 언어를 배울 수 있다.

제13조 종교교육 및 윤리 (Amendment 454/2003)

1. 기초교육제공자는 다수 학생의 종교에 따른 종교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이 경우에 종교교육은 다수의 학생이 속하는 종교단체에 맞게 마련된다. 이러한 종교단체에 속하지 않는 학생도 부모/보호자가 그러한 사정을 기초교육제공자에게 통지한 후에는 상기의 종교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2. 제1항이 규정한 종교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기독교루터교회 또는 그리스정교회에 속하는 3명이상의 학생은 자신의 종교에 따른 교육을 받는다.
3. 제1항이 규정한 종교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제2항이 규정한 종교단체 이외의 단체에 속하는 3명이상의 학생은, 그들의 부모/보호자가 요청한 경우에 그들 자신의 종교에 따른 종교교육을 받는다.
4. 하나 이상의 종교단체에 속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그의 부모/보호자는 학생이 어느 종교교육에 참여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5. 어느 종교단체에도 소속되지 않아 제1항에 따른 종교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은 윤리를 학습한다. 종교단체에 소속되어 있기는 하지만 자신의 종교에 따른 종교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은 그의 부모/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윤리를 학습한다. 기초교육제공자는 적어도 3명의 학생이 윤리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다면 윤리교육을 해야 한다.
6. 어떠한 종교단체에도 소속되지 않은 학생은 부모/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기초교육제공자에 의하여 행해지는 종교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러한 종교교육은 학생의 양육 및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명백히 그 학생의 종교적 신념에 부합되는 것이어야 한다.

제14조 수업시간 분배 및 핵심 교육과정

1. 정부는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국가목표를 결정해야 한다. 정부는 다양한 과목 및 그 대상집단에 대한 수업시간의 분배, 수업시간 분배에 대한 가이드상담(시간의 분배)도 결정한다.
2. 국가교육위원회는 다양한 과목, 교육과정 전반의 주제, 가이드상담, 이 법이 규정한 그 밖의 교육에 대한 목표 및 핵심내용을 결정해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홈스쿨 협력 및 학생복지의 기본원리도 지방교육권한의 범위(핵심 교육과정)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Amendment 477/2003)
3. 예비기초교육과 관련하여, 제1항이 규정한 수업시간 분배의 결정은 사회보건부의 협력을 받아 교육부에 의해 준비되어야 한다. 예비기초교육과 관련하여, 제2항에서 언급한 학생복지, 홈스쿨 협력, 핵심 교육과정에 대한 결정은 국가보건복지연구개발센터의 협력을 받아 국가교육위원회에 의해 준비되어야 한다.(Amendment 477/2003)

제15조 교육과정

1. 교육제공자는 이 법에서 규정한 교육을 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채택해야 한다. 교육과정은 핀란드어, 스웨덴어, Saami어로 이루어지는 교육과 필요에 따라 그 밖의 다른 언어로 이루어지는 교육 사이에 개별적으로 채택되어야 한다.
2. 핵심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제14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정도로 교육과정이 지방사회보건집행 당국의 협력을 받아 작성되어야 한다. 교육제공자는 또한 핵심 교육과정에서 규정한 홈스쿨 협력을 위한

[부 록]

조직 및 학생복지를 위한 조직을 결정해야 한다.(Amendment 477/2003)

3. 주무부에 의한 인가를 받으면, 기초교육과 차상위 교육을 위한 공통교육과정이 채택될 수 있으며 기초교육 교육과정에 직업교육을 포함할 수도 있다.

제16조 보충수업 및 시간제 특수교육 (Amendment 642/2010)

1. 일시적으로 학업에 뒤처졌거나, 학습에 있어 단기간의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보충수업을 받을 권리가 있다.
2. 학습 또는 등교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은 시간제 특수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16조a 강화된 지원 (Amendment 642/2010)

1. 학습 또는 등교에 정기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학생은 그에 맞추어 고안된 학습계획에 따라 강화된 지원을 제공받아야 한다. 학습계획은 그렇게 하지 않을 명백한 이유가 없다면 해당 학생, 부모, 보호자, 필요한 경우 그 외 해당 학생의 법정대리인과 협력하여 마련되어야 한다. 강화된 지원은 특히 제16조, 제31조, 제31조a에서 언급한 학생지원의 방식과 필수교육장치를 포함한다. 강화된 지원 및 학습계획의 중요 내용은 핵심 교육과정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2. 강화된 지원의 개시 및 제공은 제31조a 제1항 및 제2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학생복지 업무에 대한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교육학적 평가에 기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학생에게 제공되는 지원은 학습계획에 기록되어야 한다. 강화된 지원은 학생의 발달수준과 개인적 필요를 고려하여 양적, 질적으로 적절하게 주어져야 한다.

제17조 특수지원 (Amendment 642/2010)

1. 특수지원은 특수교육과 이 법에 의하여 제공되는 그 밖의 지원으로 구성된다. 특수교육은 학생에게 이익이 되고 그러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 허락하는 한에서 제공된다. 특수교육은 그 밖의 지도와 함께 제공되거나, 특수교실 또는 그 외 적절한 시설에서 부분적 또는 전적으로 제공된다. 이 항에서 언급한 학생의 교육은 제14조에서 규정한 대로 제11조 규정에 기속되지 않는다.
2. 교육제공자는 특수지원을 하기 위하여 서면상의 결정을 해야 한다. 특수지원은 적어도 2학년이후부터 7학년으로 올라가기 이전까지만 검토된다. 특수지원에 대한 결정은 학생의 주된 교육그룹, 가능한 해설 및 조력 서비스, 제31조에서 언급한 기타 서비스를 확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위의 제1항에서 언급한 예외적인 교육 제공도 확정할 수 있다.
3. 특수지원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교육제공자는 행정절차법(434/2003)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학생, 부모,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그리고 교육제공자는 해당 학생의 학습에 있어서의 진보에 대한 보고와 다방면의 전문적 학생복지 협력체에서 마련된 해당 학생 및 그의 총체적 환경에 부여한 강화된 지원에 대한 해명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기반하여 교육제공자는 특수지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평가(교육학적 검토)한다. 교육학적 검토는 심리학적이거나 의학적인 의견 또는 이에 상응하는 사회적 평가를 통해 보완해야 한다.
4. 장애, 질병, 지연발달, 감정적 기능장애, 기타 상응하는 이유로 해당 학생이 학습할 수 없다는 것이 심리학적, 의학적으로 분명한 경우, 특수지원에 대한 결정은 예비기초교육이나 기초교육의 시작

[부 록]

전 또는 예비기초교육이나 기초교육 중에도 사전적인 교육학적 검토나 강화된 지원이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 그런 경우에 특수지원에 대한 결정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토되어야 한다.

5. 지방정부이외의 교육제공자는 제1항에서 언급한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학생에 대한 특수지원 결정은 교육제공자의 제안에 따라 해당 학생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정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6. 특수지원 결정을 받거나 또는 연장된 의무교육을 받는 학생을 1명이상 포함하는 교육그룹 형성에 대한 규정은 부령에 의해 제정되어야 한다.

제17조a 개별적 수업제공에 대한 계획] (Amendment 642/2010)

1. 특수지원에 대한 결정의 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개별적 수업제공에 대한 계획이 해당 학생을 위하여 마련되어야 한다. 계획은 그렇게 하지 않을 명백한 이유가 없다면, 해당 학생, 부모, 보호자, 필요한 경우 그 외 해당 학생의 법정대리인과 협력하여 마련되어야 한다. 계획은 특수지원에 대한 결정에 따라 제공되는 교육 및 기타 지원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계획은 필요에 따라 학년도당 적어도 한 번은 학생의 필요에 부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수정되어야 한다. 계획의 가장 중심적 부분은 핵심 교육과정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제18조 특별 수업제공

1. 다음의 경우에 학생의 교육은 어느 정도 이 법에 규정된 것과 달리 마련될 수 있다.

- (1) 해당 학생이 기초교육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어느 정도의 선행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 (2) 환경과 선행학습을 고려할 때 기초교육 교육과정의 성취가 해당 학생에게 어느 점에서는 불합리하게 작용하는 경우
 - (3) 해당 학생의 건강과 관련된 이유로 정당화되는 경우
2. 해당 학생의 부모/보호자가 제1항에서 언급한 방식이나 또는 그에 의하여 제정된 규정에 따른 학습을 원하지 않는 경우, 결정이 내려지기 전 부모/보호자에게 청문을 할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의무적 취학연령의 학생을 위해 마련된 것 이외의 교육에 있어서 해당 학생에게는 그에 상응하여 청문을 할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Amendment 477/2003)

제19조 공교육

1. 이 법에서 규정하는 교육은 공중을 위한 것이다.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제20조 시범교육 (Amendment 477/2003)

1. 교육 또는 수업을 진작하기 위하여 수행되는 시범교육은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수업시간의 할당, 핵심 교육과정과는 관련이 없다. 그리고 시범교육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
 - (1) 학생에게 행하는 연 또는 주의 수업 수 및 학생의 매일의 학습강도
 - (2) 학생이 학교생활을 시작하는 시점
 - (3) 일학년으로부터 다른 학년으로의 이동
2. 시범교육은 교육부에 의한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시범교육이 제1항 제1호 ~ 제3호의 규정 또는 수업시간의 분배를 벗어나지 않으

[부 록]

면, 국가교육위원회는 인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3. 시범교육의 인가는 교육제공자의 신청에 따라 부여된다. 필수적 시범교육을 위한 인가는 이를 적절한 방식으로, 학생의 교육권을 위태롭게 함이 없이 시범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교육 제공자에게 부여될 수 있다. 여러 다양한 교육제공자들에 의해 경영되는 학교들이 동일한 시범교육에 참여할 때에는, 해당 학교들이 가능한 한 지역적·언어적 조건에 있어 전형적인 것이 되도록 선택되어야 한다.
4. 시범교육 위한 인가는 최대 3년간 주어지고, 최대 2년간 연장될 수 있다. 시범교육은 국가교육위원회에 의해 채택된 시범교육 프로그램에 부합해야 한다.

제 5 장 평 가

제21조 교육평가 (Amendment 32/2003)

1. 교육평가의 목적은 교육발달을 지원하고 학습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이 법의 목적이 성취되었는지를 보장하는 것이다.
2. 교육제공자는 자신이 제공한 교육 및 그 효과를 평가하고, 그 운용에 대한 외부평가에 참여해야 한다.
3. 외부평가를 위하여 독립적인 전문가집단으로서 교육부 산하 교육평가협의회를 두어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4조에서 규정한 수업시간 분배 및 핵심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는 국가의 세부교과 학습성취도에 대한 평가를 감독하는 임무를 맡는다. 교육부는 외부 교육평가 및 학업성취도 감독평가에 대한 평가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평가협의회의 소관사항, 구성, 운용조직과 교육평가협의회에 의하여 처리되는 문제의 준비 및 이행, 평가계획의 내용에 관한 규정은 부령으로서 제정되어야 한다.(Amendment 970/2009)

4. 평가의 중요 결과는 공표되어야 한다.
5. 평가 및 그 발전에 관한 추가적인 사항은 부령에 의하여 제정되어야 한다.

제22조 학생평가

1. 학생평가의 목적은 학습을 지도 및 고양하며, 자기평가를 위한 학생의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학생의 학습, 작업, 행동은 다양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2. 학습을 통한 성과 및 진보에 대한 평가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발한 명령과 규칙에 의하여 통제되어야 한다. 보고카드에 기록되는 정보는 국가교육위원회의 판정을 받아야 한다.
3. 학생의 부모/보호자가 전반적인 학업의 성과 때문에 해당 학생의 유급시킬 생각을 품고 있지 않은 경우, 해당 부모/보호자에게는 그 문제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청문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Amendment 477/2003)

제 6 장 학습시간

제23조 학년도

1. 기초교육에 있어서 학년도는 8월 1일부터 다음년도 7월 말일까지로 한다. 1학년도는 190일의 수업일수로 구성된다. 특별한 이유로 인하여 수업일수를 초과해야할 경우에는 주무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에 속하는 독립기념일(Independence Day), 예수공현축일(Epiphany), 메이데이(the First of May)는 해당 학년도의 수업일수에서 제외한다.

[부 록]

2. 학년도의 종료는 명령으로 제정한다.
3. 피치 못할 이유로 법정된 수업일수를 채우는 것이 불가능하고 교육과정의 목표가 달리 달성되기 어려운 경우에 상실된 수업일수는 학년도 수업일수에서 최대 6일을 추가하는 것으로 복원되어야 한다.

제24조 학생의 학습강도

1. 기초교육을 행함에 있어 학생의 학습강도는 학교에서 소비하는 시간 이외에 휴식, 레크레이션, 취미를 즐기고, 통학 및 과제를 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허락될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2. 학생이 받게 되는 매일, 매주의 기초교육 학습강도는 명령에 의해 제정되어야 한다.

제 7 장 의무교육 및 학생의 권리 · 의무

제25조 의무교육

1. 핀란드에 영주하는 아동은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의무교육은 아동이 7세가 되면 시작한다. 의무교육은 기초교육 교육과정이 성취되거나, 의무교육 시작 후 10년이 경과하면 종료한다.
2. 아동의 불구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기초교육의 목표들이 9년 내에 달성되기 어려운 경우, 의무교육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1년 먼저 시작하여, 11년간 지속될 수 있다.

제26조 의무교육의 성취

1. 의무적 취학연령의 아동은 이 법에 따라 제공하는 기초교육을 받거나 그렇지 않으면 기초교육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지식을 획득해야 한다. 제25조 제2항에서 언급한 연장된 의무교육을 받는 아동

은 의무교육 첫 해에 예비기초교육에 참여해야 한다.(Amendment 477/2003)

2. 교육제공자는 기초교육을 행함에 있어 학생의 결석을 감시하여 인가되지 않은 결석은 학생의 부모/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의무교육에서 학생의 부모/보호자는 의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Amendment 477/2003)
3. 의무적 취학연령의 아동이 이 법에 따라 제공되는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해당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정부는 아동의 발달을 감독해야 한다.

제26조a 예비기초교육에 대한 권리 (Amendment 1288/1999)

1. 아동은 의무교육 개시 전에 예비기초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25조 제2항에서 규정한 연장된 의무교육을 받는 아동과 제27조에 의하여 지정된 기간보다 1년 늦게 기초교육을 시작하는 아동은 법으로 정한 의무교육의 첫 해에 예비기초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2. 제26조 제1항에 언급된 것을 제외하고, 예비기초교육의 참여는 해당 학생의 부모/보호자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예비기초교육의 등록에 관한 규정은 필요한 경우 명령에 의하여 제정되어야 한다.
3. 예비기초교육에 있어 교육그룹의 형성에 관한 규정은 필요한 경우 명령에 의하여 제정되어야 한다.

제27조 취학연령의 예외

1. 심리학적 검토 및 필요한 경우 의학적 검토에 기초하여 필수수학 능력을 가진 아동은 지정된 시기보다 1년 먼저 기초교육을 시작할

[부 록]

선택권을 갖는다. 상기 검토에 기반하여 교육제공자는 해당 아동에게 지정된 시기보다 1년 먼저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라할 수 있다.

제28조 학교교육의 장소

1. 기초교육을 받음에 있어서 학생은 제6조 제2항에서 언급한 학교에 등교할 권리를 가진다.
2. 의무적 취학연령의 아동은 또한 제1항에서 언급한 곳 이외의 학교에도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학생의 입학허가는 평등한 선택기준에 의해야 한다. 하나 또는 여러 과목을 특별히 강조하는 교육 과정에 따라 교육이 주어지는 경우, 학생의 입학허가는 이렇게 강조되는 과목에 대한 적성시험에 의할 수 있다. 선택기준 및 적성시험은 미리 알려져야 한다. 그러나 지방정부가 행하는 교육에 대한 입학허가에 있어서는 그 지역에 사는 아동에게 우선권을 주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29조 안전한 학습환경에 대한 권리

1. 교육에 참여하는 학생은 안전한 학습환경 대한 권리가 있다.
2. 교육제공자는 교육과정 설계와 관련하여, 폭력, 왕따, 괴롭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계획을 집행 및 감독해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그러한 계획의 형성과 관련하여, 핵심 교육과정상의 규칙을 발해야 한다.(Amendment 477/2003)
3. 교육제공자는 학칙을 채택하거나, 학교에서의 내부적 질서, 방해받지 않는 학습, 학교공동체의 안전 및 만족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해당 학교에 적용되는 그 외의 규칙을 발해야 한다.(Amendment 477/2003)

4. 제3항에서 언급한 학칙 및 그 밖의 규칙은 학교에서의 안전 및 만족을 위해 필요한 현실적인 장치 및 적절한 행동을 규정할 수 있다. 또한 학교 재산의 처리, 학교건물 및 학교영역에서의 체제 및 이동에 대해서도 규칙이 발하여 질 수 있다.(Amendment 477/2003)

제30조 수업 지도에 대한 권리

1. 등록된 학생은 필요에 응하여 교육과정에 따라 배우고, 가이드상담을 받으며, 학습에 있어 충분한 지원을 받고, 수업일에 등교할 권리가 있다.(Amendment 642/2010)
2. 수업 지도가 교육과정에 있어서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교육 그룹이 형성될 수 있다.
3. 학생의 부모/보호자는 제11조에서 언급한 과목 및 교육과정에 관하여 선택을 해야 한다. 선택한 과목 또는 교육과정에 대한 수업이 학생의 학교 또는 그 밖의 학교에서도 적절하게 마련될 수 없다면, 부모/보호자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청문한 후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있다.

제31조 무상교육

1. 수업, 필수 교과서, 그 밖의 수업교재, 그리고 학교 기자재는 학생에게 무상이다. 장애아동이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은 교육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해설 및 조력 서비스, 그 밖의 교육 서비스, 특별한 원조, 제39조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를 향유할 추가적인 권리를 가진다.(Amendment 477/2003)
2. 기초교육을 받는 학생에게는 수업일에 균형 잡히고, 적절하게 구성되며, 감독을 받는 식사가 제공되어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제공되는 교육 및

[부 록]

주무부에 의해 부여된 특유의 교육목표에 기초하여 제10조 제1항에 언급된 언어 이외의 언어로 사적인 조직 또는 재단에 의하여 제공되는 교육에 대해서는 학생에게 적정한 비용이 부과될 수 있다.

제31조a 학생복지 (Amendment 477/2003)

1. 학생은 교육을 받기 위해 필요한 학생복지를 무상으로 누릴 권리가 있다. 학생복지는 양호한 학습, 정신적·육체적 건강, 사회적 행복, 그리고 이러한 것들에 도움이 되는 조건을 조성하고 유지하는 조치를 의미한다.
2. 학생복지는 교육제공자가 채택한 교육과정에서 정하고 있는 학생복지와 공중보건법에 규정된 학교보건을 구성하는 학생복지 서비스,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등교지원을 포함한다.(Amendment 642/2010)
3. 학생복지는 해당 학생, 부모, 보호자 또는 그 외 해당 학생의 법정대리인과 협력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개별 학생에 관한 문제가 학생복지의 업무로 처리되는 경우, 그러한 문제의 처리는 소관사항이 직접적으로 그러한 문제를 처리하는 것인 학생복지 서비스의 제공 참여자만이 할 수 있다. 해당 학생, 부모, 보호자 또는 그 외 해당 학생의 법정대리인의 서면동의를 받거나 그 밖에 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문제의 처리에 다른 필요 집단이 참가할 수 있다.
4. 개별 학생에 관한 문제가 학생복지의 업무로 처리되는 경우. 문서에 그러한 문제의 개시자 및 대상, 결정된 추가조치 및 그 이유, 문제 처리에 참여한 자, 해당 학생에 대하여 밝혀진 정보 및 해당 정보의 수득자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어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의 책임은 기록자인 교육제공자에게 있다.
5. 교육제공자는 제36조 제1항 이하에서 언급한 제재를 야기하는 행동을 한 학생이나 제36조 제2항 및 제3항 이하에 따라 일시적으로

교육에의 참여가 배제된 학생도 필수적 학생복지는 제공받도록 보장해야 한다. 제36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조치를 취한 후에도, 학생에 대한 감독이 방기되어서는 안된다.

제32조 통 학 (Amendment 642/2010)

1. 기초교육을 받거나 자발적 추가교육을 받는 학생은 학교까지의 거리가 5킬로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무료로 교통수단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예비기초교육을 받는 학생은 집부터 학교까지 또는 보육법상의 어린이집으로부터 예비기초교육 장소까지의 거리가 5킬로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집부터 직접적으로 예비기초교육 장소까지 또는 어린이집부터 예비기초교육 장소까지 무료로 교통수단을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예비기초교육 장소에서 집이나 어린이집까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기초교육, 자발적 추가교육 또는 예비기초교육을 받는 학생은 위에서 언급한 교통이 학생의 나이나 다른 상황을 고려해볼 때 너무 어렵고, 힘이 많이 들거나 위험한 경우 무료로 교통수단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 무료 교통수단 이용 대신 학생을 학교로 수송하거나 동반하는 데 대한 적절한 보조금이 지급될 수도 있다.(Amendment 1139/2003)
2. 위의 제1항에서 언급한 매일의 통학시간은 기다리는 시간 포함하여 2시간 30분 이내여야 한다. 학생이 학년도 초에 13세가 된 경우에는 통학시간이 3시간 이내가 되도록 해야 한다.
3. 제1항에서 언급한 학생이 제6조 제2항에서 언급한 학교 이외의 학교 또는 교육시설에 입학허가를 받은 경우, 그 입학은 부모/보호자가 학생을 학교로 수송 또는 동반하는 비용에 대한 책임을 떠맡는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

[부 록]

4. 교통수단을 기다리는 학생에게는 안내된 행동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제33조 숙박시설

1. 기초교육을 받거나, 추가교육을 받거나. 제25조 제2항의 연장된 의무교육상의 예비기초교육을 받는 학생의 통학이 제32조 제2항에서 규정된대로 충족되기 어려운 경우, 해당 학생은 무료로 숙식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Amendment 1288/1999)
2. 학년도 동안에 해당 학생은 휴일 및 주말에 숙박시설과 학생의 집 사이를 무료로 다닐 수 있다.
3. 숙박시설의 학생은 숙박시설에 있는 자신의 거처에서 그들에게 적합한 합리적인 수준의 집안일을 해야 한다.
4.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 제2항에서 언급한 학교 이외의 학교에 입학한 학생에게는 적절한 비용이 부과될 수 있다.

제34조 사고의 처리 및 보전

1. 학교 또는 학습이 이루어지는 그 밖의 다른 장소, 통학의 도중, 숙박시설 등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은 해당 학생의 비용부담 없이 치료되어야 한다. (Amendment 1288/1999)
2. 학교보전 및 학생의 사회적·심리적 문제를 다루는 서비스는 별개의 규정이 제정되어야 한다.

제34조a 갯생에 있어서의 협력 (Amendment 508/2003)

1. 갯생에 있어서의 협력은 갯생서비스의 협력에 대한 법(497/2003)의 해당 규정에 의한다.

제35조 학생의 의무

1. 학생은 특별한 이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참석을 면제받은 경우가 아니면, 기초교육에 참가해야 한다.
2. 학생은 열심히 과제를 완수해야 하며,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

제36조 징 계 (Amendment 477/2003)

1. 교육을 방해하거나, 학칙을 위반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학생에게는 방과 후 최대 2시간 동안 학교에 남아 있도록 하거나, 서면경고를 줄 수 있다. 위반이 심각하거나, 위에서 언급한 방과 후 남기 또는 서면경고 후에도 해당 학생이 계속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 학생은 최대 3개월의 유기정학을 받을 수 있다. 서면경고 및 정학은 제재이다.
2. 수업의 나머지 사람들을 위해서 교육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또는 그 외 교육시설로부터 퇴거시키거나, 학교 모임에서 떠나도록 명령할 수 있다.
3. 해당 학생의 폭력적이거나 공격적인 행동이 다른 학생 또는 학교 또는 그 외 교육시설에서 일하는 자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는 경우 또는 해당 학생의 방해행동이 교육 또는 교육과 관련된 행동을 곤란하게 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남아있는 수업일 이내의 기간 해당 학생이 교육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4. 과제하는 것을 게을리 해 온 학생은 방과 후 최대 한 시간 동안 감독 하에 과제를 행하도록 명령을 받을 수 있다.

제36조a 징계절차 및 정학의 집행
(Amendment 477/2003)

1. 학생이 방과 후 학교에 남아있도록 하기 전, 서면경고가 학생에게 발하여지기 전, 그리고 학생이 정학을 받기 전에 징계조치를 야기한 행위 또는 의무태만이 구체적으로 열거되어야 하고, 해당 학생이 이에 대하여 청문의 기회를 가져야 하며, 그 밖의 필요한 조사절차가 실시되어야 한다. 징계조치가 취하여지기 전에 해당 학생의 부모/보호자에게도 청문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해당 학생의 부모/보호자는 제36조에서 언급한 조치 이외의 조치에 대해서도 통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학교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사회복지 집행 공무원에게도 학생이 일시적으로 교육에 참가하는 것이 금지된 경우에는 통지가 되어야 한다. 방과 후 학교에 남아 있기 및 서면경고에 관해서는 항상 공식적인 결정이 발하여져야 한다. 그리고 제36조에서 언급한 그 밖의 조치는 반드시 기록되어야 한다.
2. 교육제공자는 정학을 받은 학생이 해당 학년 및 교육그룹의 진보에 뒤처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수업을 마련해야 한다. 정학을 당한 학생을 위하여 어떠한 수업을 줄지 교육과정에 기초한 개인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하며, 감독 하의 학습이 마련되어야 한다.
3. 정학결정의 집행은 제31조 제1항 및 제2항 그리고 제4항 이하의 규정뿐만 아니라 행정재판절차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다.
4. 학생이 격하고 위협적으로 행동해서 다른 학생 또는 학교 또는 그 외 교육시설에서 일하는 자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수 있고,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이 재발할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 정학은 그 효력발생 여부에 상관없이 집행될 수 있다.

5. 미결결정의 집행과 그것의 집행이 착수되는 날짜에 관한 결정은 정학결정과 동시에 만들어져야 한다.
6. 교장 및 교사의 권한과 제36조 제2항 ~ 제4항에서 규정한 문제에 관한 추가적인 규정은 부령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제36조b 지장을 주면서 잠재적으로 위험성이 있는 학생의 배제 (Amendment 477/2003)

1. 교장과 교사는 제36조 제2항에서 규정한 퇴거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학생을 교실 또는 그 외 교육시설로부터 배제할 권리를 가진다. 교장과 교사는 제36조 제3항에 따라 교육에 참가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금지된 후에도 떠나지 않는 학생을 학교건물로부터 배제할 권리를 갖는다.
2. 배제되어야 할 학생이 배제하려는 노력에 저항하는 경우, 교장과 교사는 물리력을 사용하여 학생을 배제할 권리를 갖는다. 물리력은 해당 학생의 나이와 위협의 급박함 또는 저항의 격렬함을 고려할 때 적당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또한 전체적인 상황의 평가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교장과 교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언급한 상황에서 합동하여 또는 개별적으로 행위할 수 있다. 해당 학생을 배제하는데 어떠한 폭행도구도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폭력을 사용한 교사 또는 교장은 그러한 폭행의 발생에 대한 서면상의 해명자료를 교육제공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4. 물리력의 과도한 사용에 관한 규정은 형법(39/1889)의 제4장, 제6조 제3항 및 제7항에 규정되어 있다.

제36조c 계류 중인 소송 및 법원의 명령에 관련된 징계조치 (Amendment 477/2003)

1. 법정에 학생에 대한 소송이 계류 중인 동안에는, 같은 이유로 인한 징계조치도 착수되거나 집행되어서는 안된다.
2. 사법재판소가 학생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경우에, 같은 이유로 인한 징계조치도 착수되거나 집행되어서는 안된다. 다만, 범죄로 여겨지지 않는 않지만 징계조치에 의하여 처벌가능한 행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사법재판소가 학생에게 형벌을 선고한 경우에, 같은 이유로 인한 어떠한 징계조치도 취해져서는 안된다. 다만, 학생의 범죄 또는 그 관련요소를 고려할 때 정당화되는 경우 학생에게 정학을 내릴 수 있다.

제 8 장 기타조항

제37조 교직원

1.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을 제공하는 각 학교는 그 운용에 책임을 지는 교장을 둔다.
2. 교육제공자는 교육의 형식을 고려하여 충분히 많은 수의 교직과 고용계약을 맺은 교사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교육제공자는 시간제 교사, 조교, 그 외의 직원을 둘 수 있다.
3. 교장에게 필요한 자격요건에 관한 규정은 부령에 의해 제정되어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는 부령의 규정을 보충하는 규칙을 발할 수 있다.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지방행정국은 자격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Amendment 1444/2009)

제38조 개별적 시험

1. 기초교육 교육과정 또는 그 일부분은 부령에서 규정된 대로 개별적 시험을 볼 수 있다.

제39조 특수교육에 관한 지원서비스 (Amendment 642/2010)

1. 교육문화부는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특수교육 및 성장, 지도, 교육에 관한 지원과 함께 갱생에 관한 일을 처리한다.

제40조 개인정보의 비밀 및 처리 (Amendment 642/2010)

1. 교육제공에 책임이 있는 조직의 구성원, 제37조에서 언급한 자, 학교 사회복지사, 학교 정신분석의사, 교생은 이 법에서 규정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알게 된 학생, 이 법에서 언급한 직원, 또는 그들의 가족 구성원의 신상 및 경제상황을 외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2. 제1항의 규정 또는 그 밖의 비밀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생복지 업무에 참여하는 자는 해당 학생에게 적절한 수업 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여 서로에게 알릴뿐만 아니라, 해당 학생의 교사 및 이 법에 따라 교육운용에 책임이 있는 당국에도 알릴 권리가 있다.
3. 해당 학생의 부모, 보호자 또는 그 밖의 법정대리인의 항목화 된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수업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비밀정보를 다른 집단에 요청할 수 있다.
4. 학생이 이 법에 따라 다른 교육제공자가 제공하는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이전 교육제공자는 지체없이 해당 학생을 지도하는

[부 록]

데 필요한 정보를 새로운 교육제공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그러한 정보는 새로운 교육제공자의 요청에 따라 제공될 수도 있다.

제41조 정보에 대한 접근

1. 의무를 행함에 있어서 교육제공자는 국가 또는 지방정부로부터 교육을 계획하고 제공하는데 필요한 통계적인 정보 및 그에 상응하는 정보를 획득할 권리가 있다.
2. 정보에의 접근을 요청받는 경우 교육제공자는 교육평가 및 발달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국가교육 당국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보, 통계 및 감독 모음집을 국가교육 당국에 제공해야 한다.
3. 학생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않는 학교에서 학생이 교육을 받는 경우, 교육제공자는 의무교육의 성취를 감독하도록 학생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학생을 알려야 한다.
4. 비밀에 관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제공자는 사회보건당국, 사회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외 생산자, 그리고 보건전문가로부터 학생을 지도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무상으로 획득할 권리가 있다.(Amendment 642/2010)

제42조 소제기 (Amendment 1444/2009)

1. 제13조에서 규정한 종교 및 윤리 지도, 학생에게 발하여진 경고, 정학, 제31조, 제31조a, 제32조, 제33조, 그리고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한 편익 및 권리에 관한 교육제공자의 결정을 이유로 한 소가 행정사법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법원에 제기될 수 있다. 이 항에서 언급한 결정 이외에 제36조에서 언급한 교육제공자의 결정에 대해서는 소가 제기되어서는 안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정이 다음 사항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 소는 행정사법절차법 규정에 따라 지방행정국에 제기되어야 한다.
 - (1) 학교에의 입학허가
 - (2) 제17조에서 규정한 특수지원의 제공(Amendment 642/2010)
 - (3) 제18조에서 규정한 특별 수업제공
 - (4) 제27조에서 규정한 취학연령의 예외
3. 제2항 제1호 ~ 제3호에서 규정한 문제에 대하여 지방행정국이 내린 결정의 항소는 행정사법절차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법원에 제기되어야 한다. 제2항 제4호에서 언급한 문제에 대하여 지방행정국이 내린 결정은 항소할 수 없다.
4. 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언급한 결정 또는 학생에게 서면경고를 발한 결정, 학생에게 정학을 준 결정에 대한 소제기는 학생의 부모가 해당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내에 제기되어야 한다. 이 항에서 언급한 문제는 긴급한 것으로서 처리되어야 한다.
5. 제3항과 제4항에서 언급한 문제에 관한 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 상소할 수 없다.
6. 위의 제22조에서 규정한 학생평가에 관한 결정에 대해서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학생의 부모/보호자는 학생을 유급시키는 결정이나 학년도 말의 평가가 다시 행해지도록 요청할 수 있다. 부모/보호자가 요청에 따른 새로운 평가나 요청을 거부한 결정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부모/보호자는 지방행정국에 해당 평가를 바로잡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재평가 및 평가의 수정에 관한 추가적인 규정은 명령에 의하여 제정되어야 한다.
7. 교육이 해외에서 제공되는 경우, 관할행정법원은 Helsinki 행정법원이고, 관할지방행정국은 Southern Finland 지방행정국이다.

제43조 자금조달 (Amendment 1707/2009)

1. 이 법에서 규정한 예비기초교육과 기초교육에 대한 자금조달은 지방기초 서비스를 위한 정부이송법(1704/2009)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예비기초교육과 기초교육의 운용자금에 대한 그 밖의 자금조달은 교육 및 문화 자금조달에 관한 법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사전 및 사후학교활동을 위한 자금조달은 교육 및 문화 자금조달에 대한 법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2. 기초교육법에 의한 교육 및 활동의 자금조달에 대한 국가 보조금, 설립 및 건축 프로젝트에 대한 국가 보조금은 교육 및 문화 자금조달에 관한 법 규정에 따라 국가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여될 수 있다.

제44조 학생에게 부과되는 비용

1. 학생에게 부과되는 비용에 대한 결정은 국가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의 기준에 관한 법(150/1992) 중에서 공법의 대상이 되는 업무의 비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주무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2. 이 법에 따라 학생에게 부과된 비용이 만기일까지 지불되지 않은 경우에, 지급기일을 넘긴 금액에 대하여 이자법(633/1982)에 따라 연이자가 부과될 수 있다.
3. 해당 비용은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이 없이도 집행처분에 의한 세금 및 비용의 징수에 관한 법(367/1961) 규정에 따라 징수될 수 있다.

제45조 감독의무의 해태

1. 학생의 부모/보호자가 의무교육의 성취의 보장의무를 게을리 하는 경우에 의무교육 성취의 보장의무 위반으로 벌금을 부과받는다.

제46조 의무적 취학연령인 학생 이외의 자를 위한 교육

1. 의무적 취학연령인 학생 이외의 자에게 제공되는 기초교육은 제2조,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제9조 제1항, 제10조 ~ 제15조, 제18조 ~ 제22조, 제29조, 제30조 제1항, 그리고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 제44조에 의한다. 수업, 교과서, 그 밖의 수업교재, 그리고 학교장비 및 수업재료는 해당 학생에게 무상으로 한다. 지방정부 또는 자치적 컨소시엄의 결정에 따라 또는 제7조에서 언급한 인가 약정에 따라 기숙학교의 형식으로 제공되는 교육에 있어서, 해당 학생은 숙박시설과 충분한 식사를 무상으로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전업학습에 임하는 경우에 해당 학생은 교육과정에 따라 출석이 요구되는 수업일에 교육제공자에 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무료 식사를 할 권리가 있다. 학생은 제36조 제1항의 규정을 이유로 하여 서면경고를 받거나 최대 1년간 유기정학을 받을 수 있다.
2. 기초교육 교육과정에 포함된 하나 또는 몇 과목의 과정만을 배우고자 하는 자도 또한 학생으로서 입학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 항에서 언급한 학생에게는 적정한 수업료가 부과될 수 있다.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교육은 핵심 교육과정에서 정한 정도까지 제11조 및 제13조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아니다. 18세 이상의 학생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종교교육을 받거나, 윤리를 배워야 한다.
4. 이 조에서 규정한 교육은 부분적 또는 전적으로 원격교육의 방식으로 마련될 수 있다.

제47조 지원활동

1. 도서관, 동아리, 교육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그 밖의 활동도 기초교육과 함께 마련될 수 있다.

제47조a 학생협의회

1. 위의 제6조 제2항에서 언급한 학교는 학생으로 구성된 학생협의회를 둘 수 있다. 이 협의회는 학생과 관련한 문제에 학생의 공동활동, 영향력 행사, 참여를 증진하는 것을 소관사항으로 한다.
2. 학생협의회 활동조직은 교육제공자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협의회 활동조직은 학생들의 나이 및 그 지역 환경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아야 한다. 여러 학교 또는 운용조직들은 연합 학생협의회를 둘 수 있다.
3. 교육제공자가 위의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학생협의회 활동조직을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교육제공자는 학교 또는 기타 운용조직의 작용과 관련된 집합적인 학생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학생들이 그들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8조 추가적인 규정

1.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추가적인 규정은 명령에 의하여 제정되어야 한다.

제 8 장a 사전 및 사후학교활동 (Amendment 1136/2003)

제48조a 목적 및 지침

1. 사전 및 사후학교활동의 목적은 학교와 가정의 교육, 아동 정서 생활의 발달, 윤리성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사전 및 사후학교활동은 아동의 복지 및 사회적 평등을 증진하고, 배제는 방지하되 포함은 증진하도록 해야 한다.
2. 사전 및 사후학교활동은 유도되면서도 새로운 활동에 참여할 다양한 기회 및 조용한 환경에서 쉴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그 일에 적합한 유능한 자의 감독 하에 제공해야 한다.
3. 국가교육위원회는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 및 사후학교활동의 목적 및 중심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사전 및 사후학교활동의 지침).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보건복지연구개발센터와 협력하여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제48조b 제공 및 그 범위

1. 지방정부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전 및 사후학교활동을 제공하고 구매할 수 있다. 지방정부가 이 법에서 규정한 사전 및 사후학교활동을 제공하거나 구매한 경우에 사전 및 사후학교활동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용중인 학교의 1학년, 2학년 학생이 이용가능하고, 그 밖의 학년에 있어서는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학생이 지방정부에 의하여 결정된 범위 내에서 이용가능하다. (Amendment 642/2010)
2. 사전 및 사후학교활동에 대한 신청은 지방정부가 결정한 대로 행한다. 지방정부는 사전 및 사후학교활동의 장소, 그 시작시간과 종

[부 록]

료시간, 신청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사전 및 사후학교활동의 허가에 있어, 그 선택의 기준은 모든 아동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3. 지방정부는 사전 및 사후학교활동을 단독으로 또는 다른 지방정부와 연합하여 제공하거나, 공적 또는 사적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구매하여 제공할 수 있다. 지방정부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보조금을 부여함으로써 목적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획득할 수도 있다. 사전 및 사후학교활동의 제공은 서로 다른 언어그룹의 필요에 부응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획득한 서비스가 이 법에 맞게 제공된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제32조에 따라 무료로 통학할 권리 있는 아동은 사전 및 사후학교활동에 있어서도 이러한 편익을 보장받는다.
4. 사전 및 사후학교활동은 각 참여 학생에게 1학년도에 570시간이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은 주로 주중에 7시간 ~ 17시간 동안 제공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의 계획자는 학생의 가족 및 해당 서비스 제공자와 협력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전 및 사후학교활동에 대한 시행계획을 채택해야 한다. 시행계획의 내용에 관한 추가적인 규정은 부령에 의하여 발하여 질 수 있다.

제48조c 평가

1. 사전 및 사후학교활동은 제48조a에서 결정된 목적의 성취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정부는 제공 또는 획득된 사전 및 사후학교활동을 평가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외부평가에 참여해야 한다. 평가의 결과는 공표되어야 한다.

제48조d 안전한 활동환경 및 학교생활의 편익에 대한 권리

1. 사전 및 사후학교활동에 참가하는 아동은 안전한 활동환경에 대한 권리가 있다. 사전 및 사후학교활동에 참가하는 아동에게는 간식이 제공되어야 한다. 사전 및 사후학교활동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치료는 해당 아동에게 무상으로 제공된다.

제48조e 교직원

1. 사전 및 사후학교활동은 교육제공의 형식을 고려하여 충분한 수의 교직원을 확보해야 한다. 사전 및 사후학교활동의 교사에게 요구되는 자격은 법령에 의하여 제정되어야 한다.

제48조f 비용

1. 매월 사전 및 사후학교활동에 대한 비용이 부과된다. 지방정부는 사전 및 사후학교활동에 부과되는 비용을 결정해야 하는데, 비용은 570시간 기준 최대 60유로이고, 760시간 기준 최대 80유로이다. 비용은 아동이 사전 및 사후학교활동에 참가하는 동안에는 매월 부과된다. 사전 및 사후학교활동이 한 달 동안 10일이내로 제공된 경우 비용은 절반만 부과되어야 한다. 아동이 질병으로 인하여 10일이상 사전 및 사후학교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도 비용은 오직 절반만 부과되어야 한다. 질병으로 인하여 한 달 내내 결석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비용도 부과되어서는 안된다. 만약 아동이 그 밖의 다른 이유로 한 달 내내 사전 및 사후학교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용의 절반이 부과되어야 한다. 사전 및

[부 록]

사후학교활동에 참가하는 데 그 외 어떠한 다른 비용도 부과되어서는 안된다.(Amendment 1136/2006)

2. 생활비, 수입 또는 보호관련 보수를 제공할 부모/보호자의 의무에 의한 보증이 있는 때에 비용은 부과되지 않은 채 남아 있거나, 감소될 수 있다.

제 9 장 효력발생 및 경과규정

제49조 효력발생

1. 이 법은 1999년 1월 1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Amendment 642/2010는 2011년 1월 1일에 효력이 발생한다.]